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의안번호 3369

202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 12.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2026년도 예산안 개요¹⁾

1. 예산안 편성방향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년도 예산안의 5대 중점 지원 방향영역으로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교육 및 미래역량 교육」, 「학생, 교원 마음건강」, 「다양한 공교육 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설정하고
- 「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①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계 강화, ②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③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지원, ④중단없는 교육기회 제공, ⑤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하며,
- 「인공지능(AI) 교육 및 미래역량 교육」을 위해 ①교원 미래역량 성장을 위한 연수·연구 지원 강화, ②수업, 평가 혁신, ③수학-과학-융합교육 (K-STEM) 내실화, ④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였고,
- 「학생, 교원 마음건강」을 위해 ①학생 마음건강 지원, ②교원 마음건강 지원(교육활동 보호)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양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①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②독서·토론·인문소양 교육, ③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 ④맞춤형 진로 교육, ⑤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 ⑥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시민 육성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위해 ①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②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③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발표함

1)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2. 예산안 편성규모

- '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9,422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10조 8,026억 7,100만원) 보다 1.3%, 1,395억 3,500만원 증액 편성된 규모임

〈표 1-1〉 2026년도 재정규모(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예산안			
		본예산 ^{주1)}	최종예산 ^{주2)}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예 산 액	10,942,206	10,802,671	11,799,251	△857,045	△7.3

※ 주1) '25년도 본예산 대비 1.3%, 1,395억 3,500만원 증액

※ 주2) '25년 10월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반영액

3. 예산안 개요

(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규모

- '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0조 9,422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10조 8,026억 7,100만원) 보다 1.3%, 1,395억 3,5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된 예산²⁾인 11조 7,992억 5,100만원보다 △7.3%, △8,570억 4,500만원 감액 편성 요청된 것임

- 세입예산은 ①이전수입 10조 5,572억 5,600만원, ②자체수입 1,013억 1,900만원, ③기타(전년도 이월금, 금융자산회수) 36억 3,000만원, ④내부거래 2,800억원을 편성하고,

2)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금액을 금년도 최종예산으로 검토함

- 세출예산은 ①인건비 7조 5,547억 9,200만원, ②경상비 1조 247억 2,600만원, ③교육·시설사업비는 2조 3,349억 2,100만원, ④재무활동은 74억 5,800만원, ⑤예비비 및 기타는 203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2) 세입예산

- '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7.3\%$, $\Delta 8,570억 4,500만원$ 이 감액 편성된 10조 9,422억 600만원임
- **이전수입**은 '26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의 96.5%를 차지하며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7.2\%$, $\Delta 8,166억 9,200만원$ 감소한 10조 5,572억 5,600만원으로,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조 3,149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8.6\%$, $\Delta 5,967억 3,700만원$ 감소하였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조 2,260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4.9\%$, $\Delta 2,178억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 기타**이전수입**은 161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1.7\%$, $\Delta 21억 4,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의 0.9%에 해당되며 이자수입 및 토지매각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18.6\%$, $\Delta 231억 8,600만원$ 감액된 1,013억 1,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기타**는 세입예산의 0.1%에 해당되며 '26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이월금을 편성하지 않아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Delta 98.8\%$, $\Delta 2,971억 6,600만원$ 감액된 36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바, 금년도에는 기금전입금 등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6년도에는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2,800억원을 전입받을 것을 계획하여 세입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1-2〉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6 년 도		2 0 2 5 년 도		증 감	증감률
	예 산 안	구 성 비	최 종 예 산	구 성 비		
합 계	10,942,206	100.0	11,799,251	100.0	△857,045	△7.3
이 전 수 입	10,557,256	96.5	11,373,949	96.4	△816,692	△7.2
중 앙 정 부 입	6,314,966	57.7	6,911,703	58.6	△596,737	△8.6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4,226,097	38.6	4,443,903	37.7	△217,805	△4.9
기 타 이 전 수 입	16,192	0.1	18,341	0.2	△2,149	△11.7
자 체 수 입	101,319	0.9	124,505	1.1	△23,186	△18.6
기 타	3,630	0.1	300,797	2.5	△297,166	△98.8
전 년 도 이 월 금	-	-	297,166	2.5	△297,166	순감
금 용 자 산 회 수	3,630	0.1	3,630	0.1	-	-
내 부 거 래	280,000	2.6	-	-	280,000	순증
전 입 금	280,000	2.6	-	-	280,000	순증

(3) 세출예산

1) 총계규모

- '26년도 예산안의 **총계규모**는 '25년도 최종예산(11조 7,992억 5,100만원) 보다 △7.3%, △8,570억 4,500만원이 감액된 10조 9,422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2) 성질별 재원 배분

- **인건비**는 '26년도 세출예산의 69.0%, 7조 5,547억 9,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7조 3,075억 7,300만원)보다 3.4%, 2,472억 1,9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 ①공·사립 교직원 보수인상률(3.5%) 적용 및 법정부담금 요율 변경에 따른 증액분, ②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③2024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기본급 및 수당인상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경상비**는 '26년도 세출예산의 9.4%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금년도 최종예산(1조 108억 6,400만원) 보다 1.4%, 138억 6,100만원 증액된 1조 247억 2,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학교운영비 증액분을 반영한 공통경상운영비와 목적성사업 정비에 따른 통합교부운영비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사업비**는 '26년도 세출예산의 21.3% 규모로 금년도 최종예산(3조 4,132억 2,000만원) 보다 △31.6%, △1조 782억 9,900만원 감액된 2조 3,349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바,
 - **교육사업비**는 금년도 최종예산(2조 5,292억 1,200만원) 보다 △14.1%, △3,577억 4,000만원 감액된 2조 1,714억 7,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년 대비 다수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었으나, 학생맞춤통합

지원체계 구축,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시설사업비**는 금년도 최종예산(8,840억 800만원) 보다 $\triangle 81.5\%$, $\triangle 7,205억 5,900만원$ 을 감액한 1,634억 4,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본예산(안)으로 편성요청한 사업 물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에서 ①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및 ②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5,350억 9,400만원을 지출 계획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감소분을 기금으로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판단됨
- **재무활동**은 금년도 최종예산(111억 2,500만원) 보다 $\triangle 33.0\%$, $\triangle 36억 6,600만원$ 감액된 74억 5,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금년도에는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7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6년도에는 기금전출금은 편성하지 않고, 일시차입금 관리를 위한 이자와 BTL상환을 위한 경비만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 최종예산(564억 6,800만원) 보다 $\triangle 64.0\%$, $\triangle 361억 5,900만원$ 이 감액된 203억 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금년도의 경우, '25년 6월, 제1회 추경을 통해 예비비(311억 6,900만원), 제지출금등(210억 5,000만원)과 내부유보금(4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①'26년도에는 예비비 200억원과 ②반환금 3억 800만원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1-3〉 세출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6 년 도		2 0 2 5 년 도		증 감	증감률
	예 산 안	구성비	최 종 예 산	구성비		
합 계	10,942,206	100.0	11,799,251	100.0	△857,045	△7.3
인 건 비	7,554,792	69.0	7,307,573	61.9	247,219	3.4
공 무 원	4,839,779	44.2	4,678,182	39.6	161,597	3.5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1,326,844	12.1	1,283,206	10.9	43,637	3.4
사립학교	1,388,168	12.7	1,346,184	11.4	41,984	3.1
경상비	1,024,726	9.4	1,010,864	8.6	13,861	1.4
교육행정기관운영비	45,228	0.4	40,631	0.3	4,596	11.3
학교운영비	979,497	9.0	970,232	8.2	9,264	1.0
사업비	2,334,921	21.3	3,413,220	28.9	△1,078,299	△31.6
교육사업비	2,171,472	19.8	2,529,212	21.4	△357,740	△14.1
시설사업비	163,448	1.5	884,008	7.5	△720,559	△81.5
재무활동	7,458	0.1	11,125	0.1	△3,666	△33.0
지방채상환등	7,458	0.1	3,325	0.0	4,133	124.3
기금전출금	-	-	7,800	0.1	△7,800	△100.0
예비비 및 기타	20,308	0.2	56,468	0.5	△36,159	△64.0

II.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2026년도 예산안의 특징

(1) 세입예산 검토개요

- '26년도 세입예산안은 10조 9,422억 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25년도 최종예산 대비 총 세입규모를 △7.3%, △8,570억 4,5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한 것임
- 전체 세입의 96.5%에 해당하는 이전수입의 경우, 금년도 11조 3,739억 4,900만원보다 △7.2%, △8,166억 9,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 교육부와 서울시의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과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수입 등이 감소한 바,
 - 금년도 본예산에는 미편성되었던 증액교부금(무상교육경비)이 관련법 개정 ('25. 8.26)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특별교부금이 미편성되고 보통교부금이 금년도 수준보다 감소됨에 따라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감소하였고,
 - 세수전망 둔화로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감소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여건 변화로 교육경비보조금도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보다 이전수입을 감액 편성한 것임
- 자체수입의 경우, 사용료 증대로 행정활동수입은 증가하였으나, 토지매각 수입 감소,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자금 운용규모 축소 등으로 자산수입 및 이자수입 등은 감액되어, 금년도 1,245억 500만원 보다 △18.6%, △231억 8,6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됨
- 기타(전년도이월금 및 금융자산회수)의 경우, 금년도 최종예산(3,007억 9,700만원) 대비 △98.7%, △2,971억 6,600만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

되는 바, '24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2,965억 1,700만 원을 '25년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조치한 바 있어 '26년도 예산안과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됨

- 내부거래의 경우, '25년도에는 기금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6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보전을 위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전입금 2,8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고교무상교육 경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 등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과 관련된 근거 법령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당분간 급격한 재원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내국세 연동방식의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가 예상되는 바,
- 결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이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은 더욱 위축될 수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재정안정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1〉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외부재원의존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최종(본)예산액(A) ^{주1)}	10,942,206	11,799,251	12,448,668	13,553,736	14,373,020
이전수입총액 (B)	10,557,256	11,373,949	11,199,686	12,010,272	13,724,571
외부재원의존도(B/A)	96.4	96.4	90.0	88.6	95.5

※ 주1) 2022년도~2024년도(결산확정액), 2025년도(최종예산액), 2026년도(본예산안편성액)

(2) 세출예산 검토개요

- '26년도 세출예산은 10조 9,422억 600만원을 편성한 바,
- '26년도 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미편성, 보통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재원 감소 등에 따라 교육재정여건 둔화로 금년도 최종예산(11조 7,992억 5,100만원) 대비 △7.3%, △8,570억 4,500만원이 감소한 것인 바,
 - 시설사업비(1,634억 4,800만원)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81.5%, △7,205억 5,9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그동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해오던 주요 시설사업 내역을 '26년도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지출계획하여 제출하였음
 - 다만, 인건비(7조 5,547억 9,200만원)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3.4%, 2,472억 1,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보수 상승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5대 영역으로, ①평등하고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 ②인공지능 및 미래역량 교육 강화, ③학생·교원 마음 건강 증진, ④다양한 공교육 강화, ⑤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23~'25년도의 경우, 국가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된 바 있고 '26년도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이전재원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고정경비의 증가 추세와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디지털교육 강화, 마음건강 고위기 학생 지원 등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예산총칙의 적정성

- 예산총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예산총칙은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 제2조 계속비사업,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명시이월사업, 제5조 지방채발행 한도액, 제6조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제7조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제8조 예산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명시이월(제4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 '26년도는 금년도보다 △35건, △398억 8,900만원 감소된 53건, 184억 1,6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채발행 한도액(제5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는 것으로,
 - 교육부의 관련 규칙이 지난 '25년 2월에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2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9,461억 8,700만원으로 산정하여 교육부에 통보하고, '26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나, '26년도 세입예산안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일시차입금(제6조) 최고액**은 '2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의 10%인 1조 942억 2,000만원으로 설정하여 제출된 바,

- 일시차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발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여 사용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20년도 이후) 일시차입금이 운용된 사례는 없음
- 예산의 전용(제7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전용내역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26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중 제7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전용의 조건을 열거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중 행정과목을 운영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용의 결정 또한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총칙 제7조는 관련법에 열거된 사항을 단순히 반복하여 명시하고 있어 예산총칙중 해당사항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의 이용(제8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각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공무원 보수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성립전예산 및 간주처리(제9조)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계연도중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목적지정지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는 단서를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3.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 '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0조 9,422억 6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1조 7,992억 5,100만원) 대비 $\triangle 7.3\%$, $\triangle 8,570억$
4,500만원 감액 편성 요청된 것임

〈표 2-2〉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전년 대비	
	예산액(A)	구성비	예산액(B)	구성비	증감액(C=A-B)	증감률(C/B)
합계	10,942,206	100.0	11,799,251	100.0	△857,045	△7.3
이전수입	10,557,256	96.4	11,373,949	96.3	△816,692	△7.1
중앙정부이전수입	6,314,966	57.7	6,911,703	58.5	△596,737	△8.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813,988	53.1	6,437,479	54.5	△623,491	△9.6
보통교부금	5,724,197	52.3	6,241,281	52.8	△517,083	△8.2
특별교부금	-	-	196,197	1.6	△196,197	순감
증액교부금	89,790	0.8	-	-	89,790	순증
국고보조금	30,762	0.2	34,353	0.2	△3,590	△10.4
특별회계전입금	470,215	4.2	439,870	3.7	30,344	6.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70,215	4.2	439,870	3.7	30,344	6.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26,097	38.6	4,443,903	37.6	△217,805	△4.9
법정이전수입	4,199,172	38.3	4,187,124	35.4	12,047	0.2
지방세수입	4,050,747	37.0	4,061,695	34.4	△10,948	△0.3
학교용지부담금시도분담금	3,778	0.0	3,778	0.0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7,809	1.0	112,214	0.9	5,594	4.9
교육급여보조금	9,730	0.0	9,436	0.0	293	3.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7,107	0.1	-	-	17,107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26,925	0.2	256,778	2.1	△229,853	△89.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5,762	0.1	152,156	1.2	△136,393	△89.6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1,162	0.1	104,578	0.8	△93,415	△89.3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	-	43	0.0	△43	순감
기타이전수입	16,192	0.1	18,341	0.1	△2,149	△11.7
민간이전수입	16,192	0.1	14,447	0.1	1,745	12.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	-	3,894	0.0	△3,894	순감
자체수입	101,319	0.9	124,505	1.0	△23,186	△18.6
교수학습활동수입	1,534	0.0	1,578	0.0	△44	△2.8
행정활동수입	6,977	0.0	5,930	0.0	1,046	17.6
자산수입	11,342	0.1	17,553	0.1	△6,210	△35.3
이자수입	10,388	0.0	19,915	0.1	△9,526	△47.8
기타수입	71,076	0.6	79,526	0.6	△8,450	△10.6
기타	3,630	0.0	300,797	2.5	△297,166	△98.7
전년도이월금	-	-	297,166	2.5	△297,166	순감
금융자산회수	3,630	0.0	3,630	0.0	-	-
내부거래	280,000	2.5	-	-	280,000	순증
전입금	280,000	2.5	-	-	280,000	순증

(1) 중앙정부이전수입

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임
- '2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5조 7,241억 9,700만원으로 교육부가 전체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재원의 8.4%에 해당하는 규모이나, 금년도 본예산 확정교부 통지액(6조 2,412억 8,100만원)과 비교하여 $\triangle 8.2\%$, $\triangle 5,170억 8,300만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 '25년 7월, 교육부는 '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수정 교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여 서울시교육청도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을 통해 '25년도 보통교부금의 최종 교부액을 6조 686억원으로 변경요청하고 있어 최종 교부될 보통교부금(6조 686억원)과 비교하면 $\triangle 5.6\%$, $\triangle 3,444억 300만원$ 이 감액되는 규모로 사료됨

〈표 2-3〉 202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교 육 부 재원규모 (A)	2 0 2 6 년 도		2 0 2 5 년 도			최종교부액 대비	
		예 교 부 액 (B)	구성비 (B/A)	확 정 교 부 액 ^{주1)} (C)	수 정 교 부 액 ^{주2)} (D)	최종 교 부 예 상 액 (E=C+D)	증 감 액 (F=B-E)	증감률 (G=F/E)
보 통 교 부 금	67,597,105	5,724,197	8.4	6,241,281	$\triangle 172,681$	6,068,600	$\triangle 344,403$	$\triangle 5.6$

※ 주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222 ('25. 2.28),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

※ 주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239 ('25. 7.18),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수정 교부 알림"

- ▣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인 바, '26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10조 1,663억 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1%, △2,258억 6,100만원 감소한 것이며 기준재정수입액은 4조 4,421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0%, 2,912억 2,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2-4〉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주1)}	2025년도 ^{주2)}	증 감	증 감 률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①-②)	5,724,197	6,241,281	△517,083	△8.2
기 준 재 정 수 요 액 ①	10,166,305	10,392,167	△225,861	△2.1
기 준 재 정 수 입 액 ②	4,442,107	4,150,885	291,221	7.0

※ 주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021 ('25.10.22),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통지”

※ 주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222 ('25. 2.28), “2025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 기준재정수요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전년도 보다 △ 2,258억 6,100만원이 감소한 10조 1,663억 500만원으로 산정된 바,

-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중 ①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교직원 인건비’, ②기초학력보장지원 항목이 폐지되어 통합된 ‘학생맞춤통합지원비’, ③ '24년도 집행률을 적용한 ‘교육기관등 시설비’ 등은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 ④산정공식 비율이 변경된 ‘학교운영비’, ⑤지방선거경비가 감소된 ‘교육행정비’등의 측정항목은 금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⑥‘고교무상교육지원비’는 '26년도 국가 부담분이 증액교부금으로 예정교부되었음에도 향후 확정교부 시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금년도보다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자체노력수요'도 전년도(△96억 2,900만원) 대비 46.7%, 44억 9,700만원 증가한 바, 세부내역중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는 인센티브(78억 6,700만원)가 적용되었으나, '재정집행효율화지원'은 패널티가 적용(△130억원)되어 동 측정항목은 여전히 보통교부금의 감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재정집행효율화지원'의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이월률·불용률 관련 패널티는 '23년도부터 4년 연속 감액 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률에 대한 점검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5〉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세부 산정현황

(단위 : 백만원, %)

측정항목	2026년도 예정교부액	2025년도 확정교부액	증감	증감률	산정내용
합계	10,166,305	10,392,167	△225,861	△2.1	
교직원인건비	6,867,569	6,706,082	161,487	2.4	○ 임금인상률(3.5%) 반영
학교운영비	1,739,754	2,066,251	△326,496	△15.8	○ 학교경비 81%, 학급경비 81%, 학생경비 95% 적용
교육행정비	124,592	161,108	△36,516	△22.6	○ 지방선거경비 감소
학생맞춤통합지원비	311,792	279,234	32,558	11.6	
교육기관등록비	603,764	544,856	58,908	10.8	○ 2024년 집행률 고려
유아교육비	163,232	139,616	23,616	16.9	○ 학부모 부담경감(5만원 추가지원) 만3세로 확대
늘봄학교사업비	169,359	200,444	△31,085	△15.5	
고교무상교육지원비	-	30,023	△30,023	순감	○ 국가부담분 확정교부시 산정
재결함보정전	31,872	32,535	△663	△2.0	
교원연수수운영지원	92,571	86,996	5,574	6.4	○ 교원연수비 및 역량개발 지원
기초학력보장지원	-	61,920	△61,920	순감	○ 학생맞춤통합지원비로 통합
디지털기반교육활성화지원	43,523	65,281	△21,758	△33.3	○ AI 교육기반 인프라 수요 반영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운영보조	23,403	21,491	1,912	8.8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자체노력수요	△5,132	△9,629	4,497	46.7	○ 외부 교육투자 유치 78억원 ○ 재정집행효율화 지원 ^{주1)} △130억원 감액

주1) '24년도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이월률·불용률 관련 패널티 기준재정수요액 △130억원 감액

- 기준재정수입액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7조에 따라 금년도 (4조 1,508억 8,500만원) 보다 2,912억 2,100만원 증가한 4조 4,421억 700만원으로 산정된 바,
 - 기준재정수입액의 가장 큰 비중('26년도 91.4%)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전전년도('24년도) 지방세 세입 결산액에 최근 3년('22~'24년도)간의 평균 증감률과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어 금년도 기준재정수입 대비 $\Delta 8.0\%$, $\Delta 3,016억 6,100만원$ 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자체수입은 '25년도에 신설된 항목으로 전전년도('24년도)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의 과거 3년간 평균 세입결산액을 산출하여 2,008억 8,600만원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됨
- 교육부의 “2026~203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통교부금 잠정액”에 따르면 '26년도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금년도보다 $\Delta 6,494억 5,800만원$ 감소하고, '25~30년도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예상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에 연동되는 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동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 교육부 예정교부통지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도 보통교부금은 ①당해연도 확정교부액 통지에 의한 조정, ②전년도 결산액에 따른 정산 차액 교부, ③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증감, ④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당해연도 감액교부 등 정부로부터 연중 여러 차례 교부액 증감 통보가 발생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2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액의 44.5%에 달하는 2조 3,376억원이 회계연도 중에 증액 교부되었고, '23년도와 '24년도에는 확정교부통보 이후 세수감소를 이유로 각각 $\Delta 8,753억 4,000만원$ 과 $\Delta 3,667억 2,100만원$ 이 당해연도에 감액 교부되었으며, '25년도에도 제2회 정부 추경예산에 따라 $\Delta 1,726억 8,100만원$ 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표 2-6〉 최근 4년간 보통교부금 조정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 편성액 ^{주1)} (A)	보통교부금 조정 증감액(E)			최종내시액 (F=A+E)	본 예산 대비	
		확정교부 증 감 액 (B)	지난연도 정 산 분 (C)	추경편성 등 증 감 액 (D)		증 감 액 (G=F-A)	증감률 (G/A)
2025년	6,123,184	118,097	-	△172,681	6,068,600	△54,583	△0.8
2024년	5,903,438	10,631	4,367	△366,721	5,551,715	△351,723	△5.9
2023년	6,390,221	△27,968	-	△875,340	5,486,913	△903,308	△14.1
2022년	5,251,973	394,558	628,762	1,314,295	7,589,589	2,337,615	44.5

※ 주1) 본예산 편성 기준 :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 자료근거 : 예산담당관-10047 ('25.10.27), '26년도 예산(안) 요구자료

교육재정과-7865 ('25. 3.31), '24년도 결산 요구자료

○ '23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는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보통교부금을 당해연도에 감액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반복하였고, 서울시교육청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에서는 정부는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부금에 반영하고, 특히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더욱이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액되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감액경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연도에 교부금을 감액하는 교육부의 현행 방식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경우에도 '24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3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회계연도중 감교부한 사항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시정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상 근거와 정책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운 여건과 안정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회계연도 중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교육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들 경우 교부금에 대한 감액교부가 다음연도로 일부나마 유예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7〉 202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정교부(A)	2025년도 확정교부(B)	증 감 액 (C=A-B)	증 감률 (C/B)
보 통 교 부 금 ① - ② + ③	5,724,197	6,241,281	△517,083	△8.2
기 준 재 정 수 요 ①	10,166,305	10,392,167	△225,861	△2.1
교 직 원 인 견 비	6,867,569	6,706,082	161,487	2.4
학 교 운 영 비	1,739,754	2,066,251	△326,496	△15.8
교 육 행 정 비	124,592	161,108	△36,516	△22.6
학 생 맞 춤 통 합 지 원 비	311,792	279,234	32,558	11.6
교 육 기 관 등 시 설 비	603,764	544,856	58,908	10.8
유 아 교 육 비	163,232	139,616	23,616	16.9
늘 봄 학 교 사 업 비	169,359	200,444	△31,085	△15.5
고 교 무 상 교 육 지 원 비	-	30,023	△30,023	순감
재 정 결 함 보 전	31,872	32,535	△663	△2.0
교 원 연 수 운 영 지 원	92,571	86,996	5,574	6.4
기 초 학 력 보 장 지 원	-	61,920	△61,920	순감
디 지 털 기 반 교 육 활 성화 지 원	43,523	65,281	△21,758	△33.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보조	23,403	21,491	1,912	8.8
자 체 노 력 수 요	△5,132	△9,629	4,497	△46.7
학교·학급통폐합 및 신설대체이전 지원	-	1,000	△1,000	순감
학 교 신 설 민 관 협 력 확 대	-	-	-	-
외 부 로 부 터 의 교 육 투 자 유 치	7,867	4,370	3,497	80.0
재정집행효율화지원(이월 및 불용률)	△15,000	△15,000	-	-
재정집행효율화지원(상반기 예산집행률)	2,000	-	2,000	-
조 정 교 부	-	5,953	△5,953	순감
기 준 재 정 수 입 ②	4,442,107	4,150,885	291,221	7.0
법 정 전 입 금	4,241,220	3,933,964	307,255	7.8
지 방 교 육 세	1,493,698	1,239,972	253,726	20.4
시 도 세	2,357,628	2,279,226	78,401	3.4
담 배 소 비 세	212,962	243,428	△30,466	△1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 포함)	117,809	112,214	5,594	4.9
군 특 회 계 사 업 보 전 분	35,134	35,134	-	-
지 방 이 양 사 업 보 전 분	23,988	23,988	-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	-	-	-
고 교 무 상 교 육 증 액 교 부 금	-	-	-	-
고 교 무 상 교 육 전 입 금	-	-	-	-
자 체 수 입	200,886	218,377	△17,490	△8.0
자 체 노 력 수 입	-	△1,456	1,456	순감
감 사 결 과 반 영	-	-	-	-
정 정 교 부 액 ③	-	-	-	-

2)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중 1,000분의 38의 범위내에서 ①국가시책사업, ②지역교육현안, ③재해대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임
- '25년도 본예산에는 4개 국가시책사업에 대해 211억 6,100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으나, '26년도에는 특별교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바,
 - '26년도의 경우, 대응투자 예산 부족, 특별교부금 교부통지 지연 등의 사유로 미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회계연도 개시 이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가 확정되면 대응투자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8〉 2026년도 특별교부금 예산편성액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사업 수	편 성 액	사업 수	편 성 액	사업 수	편 성 액
특별교부금	-	-	135	196,197	△135	△196,197

※ 사업 수 : 사업항목1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의 수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3) 증액교부금

- 증액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26년도에는 897억 9,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임
- 증액교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2,993억원)중 국가부담분 30.0%가 교부된 것으로 확인됨

〈표 2-9〉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기관별 부담내역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국 가	교 육 청	지 방 자 치 단 체 ^{주 1)}		
				서 울 시	자 치 구	소 계
구 성 비	100.0	30.0	65.5	2.25	2.25	4.5
금 액	299,300	89,790	196,042	6,734	6,734	13,468

※ 주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 서울시 50%, 자치구 50% 부담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당초 '24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증액교부금을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 '25년 8월, 제142조의2 특례 규정이 다시 신설됨으로써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76억 2,6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26년도 본예산(안)에는 897억 9,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특례규정 신설로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연장되었지만, 일몰 전 규정에는 '국가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었으나, 신설된 규정에는 '국가는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향후 동 세목에 대한 유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 특례규정의 경우에도 '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용되는 것으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대한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여전히 잠재적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법률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부담 비율은 47.5%, 지방자치단체는 5%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부 고시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4.5%로 적용되어, 그동안 국고부담 비율 또한 48.0%로 확보된 바,

- 특례규정(제14조의2)의 신설로 교육부도 지난 '25년 9월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를 다시 제정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서울시의 재원부담 비율은 종전과 동일한 4.5%인 것으로 확인됨

〈표 2-10〉 2023~2026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

부담주체	2 0 2 2		2 0 2 3		2 0 2 4		2 0 2 5 ^{주 1)}		2 0 2 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337,301	100.0	339,068	100.0	366,923	100.0	161,722	100.0	299,300	100.0
국 가	162,317	48.1	162,753	48.0	176,123	48.0	77,626	48.0	89,790	30.0
교 육 청	159,841	47.3	161,057	47.5	174,288	47.5	76,818	47.5	196,042	65.5
자치단체	15,143	4.4	15,258	4.5	16,511	4.5	7,278	4.5	13,468	4.5
서울시	7,517	2.2	7,629	2.2	8,255	2.2	3,639	2.2	6,734	2.2
자치구	7,517	2.2	7,629	2.2	8,255	2.2	3,639	2.2	6,734	2.2

※ 주1) 2025년도 하반기분

※ 부담주체별 세입과목 : 국가(증액교부금), 교육청(보통교부금), 자치단체(무상교육경비전입금)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특별회계전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전입금임
- '26년도 세입예산(안)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4,702억 1,5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확정교부에 따른 최종예산(4,398억 7,000만원) 보다 6.8%, 303억 4,400만원 증가된 규모로 확인되나,
- 지난 '25년 8월, 교육부가 ①5세 무상교육비 및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②사업예산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25년도 교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통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5년도 보통교부금의 최종 교부액을 4,420억 9,700만원으로 변경요청한 바, '26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25년도 최종 교부액(4,420억 9,700만원)과 비교하면 6.3%, 281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됨
 - 특히 '26년도 유아수는 감소(\triangle 8,408명)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증가한 것은 교육부의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정책에 따라 유아 무상교육비 및 무상보육료 지원이 현행 5세에서 '26년도 4,5세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확인됨

〈표 2-11〉 2026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 0 2 5 년 도 예 산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확정교부	수정교부	최종교부 예상액		
합 계	470,215	439,870	2,226	442,097	28,118	6.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26년도 예산안에는 「25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에 따른 단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26년 3월, 「26년도 교육부 고시」가 시행되면 새로운 단가기준에 따른 증액분을 회계연도중 교부통보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정 요청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경우, 당초 '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지난 '25년 8월, 법률 개정을 통해 '30년 12월 31일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나,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존치기간이 연장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아닌 새로 신설된 「영유아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교육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을 근거로 하여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과목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됨

5) 국고보조금

- '26년도 세입예산중 국고보조금은 307억 6,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triangle 10.5\%$, $\triangle 35억 9,000만원$ 감액된 것임

〈표 2-12〉 2026년도 「국고보조금」 예정교부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A)	2025년도 최종예산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률 (C / B)
국 고 보 조 금	30,762	34,353	$\triangle 3,590$	$\triangle 10.5$

-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법령 등에 따라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별도 교부하는 재원으로 5개 사업, 307억 6,200만원을 편성한 바, '26년도의 경우에도 본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면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세입·세출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차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표 2-13〉 2026년도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액	편성근거
합계		30,762	
학생맞춤지원담당관	교육급여	14,595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334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교 흡연예방교육	2,158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325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전국소년체육대회	324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4612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교운동부및체육계학교지원	685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4621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스쿨	13,000	○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7364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26년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2,260억 9,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등에 대한 편성안을 통보 받아 이를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금년도 보다 △4.9%, △2,178억 500만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

〈표 2-14〉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예정교부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전년대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계	4,226,097	4,443,903	△217,805	△4.9
법정이전수입	4,199,172	4,187,124	12,047	0.2
지방세	4,050,747	4,061,695	△10,948	△0.2
지방교육세	1,902,299	1,902,908	△609	△0.0
담배소비세	233,127	249,124	△15,997	△6.4
시도세	1,915,320	1,909,662	5,658	0.2
시도세전입금	1,856,198	1,806,411	49,787	2.7
전년도정산분	-	44,128	△44,128	순감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분	35,134	35,134	-	-
국가의지방이양사업보전분	23,988	23,988	-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3,778	3,778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7,809	112,214	5,594	4.9
교육급여보조금	9,730	9,436	293	3.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7,107	-	17,107	순증
비법정이전수입	26,925	256,778	△229,853	△89.5
광역자치단체	15,762	152,156	△136,393	△89.6
기초자치단체	11,162	104,578	△93,415	△89.3
지방이양사무지원사업보전금	-	43	△43	순감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①지방세수입, ②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③교육급여보조금, ④무상교육경비전입금, ⑤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으로 '26년도에는 4조 1,991억 7,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15〉 2026년도 자치단체 「법정전입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부담 주체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4,199,172	4,187,124	12,047	0.2
서 울 시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3,778	3,778	-	-
	교 육 급 여 보 조 금	9,730	9,436	293	3.1
	무 상 교 육 경 비 전 입 금	17,107	-	17,107	순증
	소 계	4,050,747	4,061,694	△10,948	△0.2
	① 지방교육세	1,902,299	1,902,908	△609	△0.0
	담 배 소 비 세	233,127	249,124	△15,997	△6.4
	시 도 세 (지 방 세)	1,915,320	1,909,662	5,658	0.2
부 산 광 역 시	시 도 세 전 입 금	1,856,198	1,850,540	5,658	0.2
	② 균특회계시도전 환사업보전금	35,134	35,134	-	-
	③ 국가의 지방이양 사업보전분	23,988	23,988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정산분포함)	117,809	112,214	5,594	4.9

○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과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전입금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0.2%, △109억 4,800만원 감액된 4조 507억 4,700만원을 편성 요청하여 제출한 바,

- 지방세 수입이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감액 편성된 것은 지난 6월,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시가 전년도 법정전출금 정산분 등 1,746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25년도중 전출하여 '26년도 본예산(안)에는 전입액이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 **지방세 수입**중 ①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서울시에서 담배소비세액분을 포함한 7개의 세목에 대하여 1조 9,022억 9,900만원을 법정전출금 편성예상액으로 통보하여 서울시교육청이 '26년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 동 전입금중 담배소비세액분의 근거 규정인 관련 법령이 '24년 12월 31일까지 일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일몰기한을 '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됨
- **시도세전입금**의 경우, 지난 '23년 6월,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지방세법 부칙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바, 동 세입과목은 '24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부예산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안분되고 있음에도,
 -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관련 근거를 정확히 숙지하여 시도세 전입금에 대한 내용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근거한 ②균특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과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근거한 ③국가의 지방이양사업 보전금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세입과목을 '시도세전입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도세와는 목적과 재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동법 제71조제2항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입내역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적정한 세입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예산과목 신설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6〉 2026년도 지방세 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 산 안 (A)	2 0 2 5 년 도			최 종 예 산 대 비	
		본 예 산 (B)	최 종 예 산 (C)	증 감 (D=C-B)	증 감 액 (E=A-C)	증 감률 (E/C)
합 계	4,199,172	4,012,426	4,187,124	174,698	12,048	0.2
지방 교육세	소 계	1,902,299	1,817,977	1,902,908	84,931	△609 △0.0
	지방 교육세 전입금	1,902,299	1,817,977	1,865,511	47,534	36,788 1.9
	전년도 정산분	-	-	37,397	37,397	△37,397 순감
담배 소비세	소 계	233,127	246,269	249,124	2,855	△15,997 △6.4
	담배 소비세 전입금	233,127	246,269	249,124	2,855	△15,997 △6.4
	전년도 정산분	-	-	-	-	-
시도세 전입금	소 계	1,915,320	1,820,931	1,909,662	88,731	5,658 0.2
	시세 전입금	1,856,198	1,760,384	1,806,411	46,027	49,787 2.7
	전년도 정산분	-	-	44,128	44,128	△44,128 순감
	군특회계 시도 전환사업보전분	35,134	35,981	35,134	△847	-
	국가의지방이양사업 보전분	23,988	24,566	23,988	△578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매입비중 시·도분에 해당하는 50%를 반영한 것으로, 37억 7,800만 원을 세입예산안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전입금은 (가칭)산빛초 신설을 위한 용지매입비로 지난 '2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정산절차가 지연되어 서울시로부터 미전입된 바, '26년도 예산안에 재편성함으로써 '26년 7월경 서울시로부터 전입될 것으로 예상됨

〈표 2-17〉 202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입 과 목	2026년도 예 산 안 (A)	2025년도 최종예 산 (B)	증 감 액 (C=A-B)	증 감 률 (C / B)
학 교 용 지 매 입 비 시 도 부 담 금	3,778	3,778	-	-

- 아울러 관련 법령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동법 제5조의4에 따라 설치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계상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지난 '20년도부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부담금 전액을 전출하고 있음

■ 다만, 지난 '25년 6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①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준이 기존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되고, ②공동주택의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또한 0.8%에서 0.4%로 축소되어 향후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또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청의 재정운용 부담을 일부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 소비세 확대분(부가가치세 6%)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안분액과 정산분 1,178억 900만원을 반영한 것임

〈표 2-18〉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입 과 목	2026년도 예 산 안 (A)	2025년도 최종 예산 (B)	증 감 액 (C=A-B)	증 감 률 (C / B)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7,809	114,033	3,775	4.9

- **교육급여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급여 보장비용중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분 97억 3,000만원을 반영한 것임

〈표 2-19〉 2026년도 「교육급여보조금」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국 비	지 자 체			계
		시 비	구 비	소 계	
교육급여보조금	14,595	6,811	2,919	9,730	24,325

※ 재원분담 : 국고보조금 60%, 광역자치단체 28%, 기초자치단체 1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12589 ('25. 9. 2), “'26년 교육급여 지원 사업 지방비 보조금 예산안 통지(가내시)”

-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26년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분 171억 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당초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던 제14조가 '24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교육경비 전입금을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 '25년 8월, 제14조의2 특례 규정이 다시 신설됨으로써 '25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36억 3,800만원을 편성 요청하고, '26년도 예산(안)에도 171억 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6년도 세입금액 (A + B)	2026년도 (A)	2025년도 하반기 분		
			미전입(B)	전입(C)	계(B+C)
서울시	10,373 ^{주1)}	6,734	3,639	-	3,639
자치구	6,734	6,734	-	3,639	3,639
계	17,107	13,468	3,639	3,639	7,278

※ 주1) 서울특별시(평생교육국), 「2026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p.5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269억 2,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 전입금(157억 6,200만원)과 자치구 전입금(111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금년도의 경우,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2,295억 6,200만원을 이입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25년 10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627억 3,100만원을 이입하여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21〉 2026년도 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A)	2 0 2 5 년 도		2025최종예산대비		비고
		본 예산	최종 예산 (B)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계	26,925	27,216	256,778	△229,853	△89.5	
서울시 전입금	15,762	15,876	152,156	△136,394	△89.6	① 입학준비금지원 : 153억 1,200만원 ② 서울직업교육혁신지구 : 4억 5,000만원
자치구 전입금	11,162	11,340	104,578	△93,416	△89.3	○ 입학준비금지원(25개구) : 111억 6,200만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서울시전입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157억 6,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교육경비인 ①입학준비금 지원 153억 1,200만원과 ②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 4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②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지원은 국가, 서울시, 교육청이 재원을 50:25:25의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24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었으나, '25년도부터 교육부의 대응투자 요청에 따라 '26년도 예산안에 서울시전입금 4억 5,000만원과 자체재원 4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안)에 포함시켜 함께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특별교육경비보조의 경우, '26년도 예산안에는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25년 10월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5억 8,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바, '26년도에도 특별교육경비보조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학교 선정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완료한 이후 예산총칙 제9조에 근거한 성립전예산제도를 통해 우선 확정하고, 회계연도 중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하고 있고,

〈표 2-22〉 2026년도 서울시(광역) 「교육경비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증 감 (A - B)	지 원 대 상
계	15,762	15,876	△114	
일 반 교 육 경 비	15,762	15,876	△114	
입 학 준 비 금 (광 역)	15,312	15,501	△189	○ 초·중·고 신입생 186,040명
	서 울 직업 교육 혁신지구	450	375	75 ○ 직업계고 15개교
특 별 교 육 경 비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26년도에는 보통세(19조 9,319억 6,500만원) 기준으로 0.08%를 계상하여 157억 6,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25년 10월 서울시가 제출한 “26년도 서울시의 예산(안)”중 교육 경비보조금의 편성기준이 되는 보통세는 세입추계 확정 전 금액(19조 9,319억 6,500만원) 보다 755억 800만원 증가된 20조 74억 7,300만원으로 확인되어 교육경비보조금은 실제 보통세의 0.07%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2-23〉 최근 5년간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편성기준액 (A)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금		최종 편성액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2026	19,931,965	15,762	0.08	15,762	0.08
2025	18,950,203	15,876	0.08	17,765	0.09
2024	18,443,450	15,914	0.09	17,504	0.09
2023	18,355,853	27,579	0.15	29,079	0.16
2022	16,880,579	51,984	0.31	51,984	0.3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서울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의 편성기준액은 지난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 비율은 감편성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보조율(보통세의 0.6%이내) 내에서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자치구전입금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에 대한 25개 자치구 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510억 4,200만원(초등 95억 3,800만원, 중등

415억 400만원)중 초등 사업비의 30%(28억 6,100만원), 중등 사업비의 20%(83억원)를 더한 111억 6,200만원을 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세입 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4〉 2026년도 「입학준비금」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교 육 청	지 자 체			계	1 인 당 지 원 액
		서울시	자치구	소 계		
계		24,567	15,312	11,162	26,474	51,042
입 준 비 학 금	초 등	3,815	2,861	2,861	5,722	9,538 20만원
	중 등	20,752	12,451	8,300	20,751	41,504 30만원

※ 재원분담 : (초등) 교육청 40%, 시 30%, 구 30%, (중등) 교육청 50%, 시 30%, 구 2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11532 ('25. 8.12), “'26년도 초·중·고 입학준비금 예산 분담금 예산 내역 알림”

○ 그 외에도 지방이양사무 지원 예산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세입과목으로 '22년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지원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세입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분 4,380만원을 법정전출금에 포함시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전입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세입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도 자치단체로부터 이전이 확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도 '26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항목별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가 '26년도 본예산(안)에 전출금을 편성하였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26년도 본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기부금, 기타지원금, 기타협력사업비로 161억 9,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5〉 2026년도 「기타이전수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A)	2025년도 최종예산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률 (C / B)
합 계	16,192	13,229	2,962	22.4
민 간 이 전 수 입	16,192	13,229	2,962	22.4
① 기 부 금	3,702	-	3,702	순증
② 기 타 지 원 금	6,490	6,725	△234	△3.4
③ 기타협력사업비	6,000	6,504	△504	△7.7

- **기부금, 기타지원금과 기타협력사업비**는 ①도신초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의 학교 개축(증축)비 기부채납 37억 200만원, ②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지원금 64억 9,000만원, ③농협금고 협력사업비 60억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것임

(4)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1,013억 1,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6〉 2026년도 「자체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A)	2025년도 최종 예산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률 (C / B)
합 계	101,319	124,998	△23,679	△18.9
교수학습활동수입	1,534	1,578	△44	△2.8
행 정 활 동 수 입	6,977	5,930	1,046	17.6
자 산 수 입	11,342	17,558	△6,215	△35.4
이 자 수 입	10,388	19,915	△9,526	△47.8
기 타 수 입	71,076	80,015	△8,939	△11.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학생교육원 이용자의 급식비 수납 감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 증가 등의 증감에 따라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2.8%, △4,400만원 감소한 15억 3,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세입과목중 기본적교육수입으로 편성된 유치원 수업료(119만원)는 무상 교육 제외대상 즉, '유상교육' 유아에 해당되어 징수되는 금액으로,

〈표 2-27〉 2026년도 교수학습활동수입중 「기본적교육수입」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A)	2025년도 최종 예산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률 (C / B)
계	1,193	594	599	100.8
수 업 료	1,193	594	599	100.8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21

-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치원 수업료를 납부하는 대상자로, ①무상교육기간 3년을 초과하여 재원하는 유아, ②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 ③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 ②‘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유아’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 국적의 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수업료를 납부하는 대상자는 외국 국적 유아중 단기체류 등의 사유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유아인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③‘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의 경우에도 중복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시에 재원할 수 없음에도 유치원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어 사업별 설명자료가 부정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됨
- 동 세입예산은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하나, 사업부서는 수업료를 납부하는 무상교육 제외대상자 기준을 재검토하여 향후에라도 수정된 사업별 설명자료가 배부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활동수입**은 건물(행정재산) 사용료(식당, 매점, 자판기 등) 증가와 교육과정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7.6%, 10억 4,600만원 증가한 69억 7,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자산수입**은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은 일반재산의 토지 임차 및 매각계획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35.4%, △62억 1,500만원 감소한 113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것이며,
- **이자수입**은 '26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로 자금 운용규모 축소가 전망됨에 따라 이자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47.8%, △95억 2,600만원 감소한 103억 8,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 기타수입등, 지난연도수입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 $\triangle 19.5\%$, $\triangle 171$ 억 8,700만원 감소한 710억 7,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기타수입등**중 ‘**그외수입**’은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23.0%, 19억 7,100만원 증가한 105억 5,4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과거년도 자료추계치를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triangle 14.4\%$, $\triangle 85$ 억 8,700만원 감소한 510억 4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22년도에 신규편성된 과목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이후 국가, 시·도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지난연도 정산분에 대한 반납금을 위해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triangle 56.6\%$, $\triangle 106$ 억 8,700만원 감소한 81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과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의 경우, 이전수입 감소로 인해 전출금과 보조금 규모 또한 축소될 것을 예상하여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과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세입재원의 추가적인 확대가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간 정산을 위한 반납액인 바, 교육비특별회계의 자체수입(기타수입)이 확대되는 착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교육부에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표 2-28〉 2026년도 「기타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증 감 액 (C=A-B)	증 감 률 (C / B)	비 고
합 계	71,076	88,264	△17,187	△19.5	
제 재 금 수 입	959	828	130	15.7	○ 최근 5개년 평균 위약금수입 증가세 반영
기타수입 등	69,742	87,045	△17,303	△19.9	
그 외 수 입	10,554	8,583	1,971	23.0	○ 과거연도 데이터 이용한 추계
학 교 회 계 전 출 금 반납금수입	51,004	59,591	△8,587	△14.4	○ 전년도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및 정산 감소 예상
보 조 금 등 반납금수입	8,183	18,870	△10,687	△56.6	
지난연도수입	374	389	△15	△3.9	○ 최근 3개년도 결산액의 평균치 추계 및 감소세 반영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3~39

(5) 기타

□ 세입예산중 기타는 금융자산회수로 36억 3,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29〉 2026년도 「기타」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6 년 도 예 산 안 (A)	2 0 2 5 년 도 최 종 예 산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률 (C / B)
합 계	3,630	9,252	△5,621	△60.8
금 융 자 산 회 수	3,630	9,252	△5,621	△60.8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43~44

- 금융자산회수는 응자금원금회수 36억 3,000만원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일부가 반환된 자금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6) 내부거래

- 세입예산중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으로 2,80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기금전입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 2,800억원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한 바, 관련 법령에 따라 '25년도말 적립총액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세입에 계상한 것으로,

- 당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한도는 50%였으나, '25년 3월,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사용한도를 50%에서 80%로 상향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제출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구조는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어 세수변동에 취약하며, 지난 '23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세수결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 또한 세입재원이 감소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대응한 바, 향후 세입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한도를 법정최대기준인 80%, 2,800억원을 전입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당장의 재정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일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 관점의 교육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또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첫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기금의 80%를 단기간에

활용하게 되면 기금이 조기에 소진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나 지원이 필요한 교육사업 및 정책추진에 제약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

- 둘째, 세입규모 감소는 '26년도에 국한된 재정여건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나, ①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을 더한 서울시교육청의 총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②경상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전국 평균 비율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정여건의 취약성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교육청이 기금재원을 활용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기적 기금 소진 보다는 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세출조정과 함께 교육부 등과 공동 대응방안 협의 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1) 주요 법정사항 검토

1) 성인지 예산서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성인지예산서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작성·제출된 바, '2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36개 사업, 1,282억 5,100만원으로, '25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규모(33개 사업, 867억 1,600만원) 보다 3개 사업이 증가하고, 예산액은 47.9%, 415억 3,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성인지예산을 정책분야별로 검토하면, 교육부가 제시한 정책분야에 중점을 두고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분야에 5개,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분야에 3개,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분야에 28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과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분야는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표 2-30〉 성인지 예산 정책분야별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정 책 분 야	사업 개수	2 0 2 6		2 0 2 5		증 감	
		예 산 액 (A)	구성비	예 산 액 (B)	구성비	예 산 액 (A - B)	구성비
합 계	36	128,251	100.0	86,717	100.0	41,534	47.9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	-	-	-	-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5	73,108	57.0	29,708	34.3	43,400	146.1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3	18,175	14.2	18,038	20.8	137	0.8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28	36,968	28.8	38,971	44.9	△2,003	△5.1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	-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8

- 여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5개 정책분야별 소관 부처가 명시되어,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가 부여받은 정책과제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의 교육·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성인지적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특화된 양성평등한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및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분야의 과제도 발굴하여 성인지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31〉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과제별 소관 정부 부처

과 제 명	부 처 명 ^{주1)}
<p>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p> <p>1-1.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p> <p>1-1-① 성별임금격차 개선</p> <p>1-1-② 고용 현장 성차별 해소</p> <p>1-2.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p> <p>1-2-①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 지원</p> <p>1-2-② 미래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p> <p>1-2-③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참여 확대</p> <p>1-3.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p> <p>1-3-① 모·부성권 보장 강화</p> <p>1-3-② 근로시간과 돌봄시간 균형 지원</p> <p>1-3-③ 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p>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동반성장위원회
<p>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p> <p>2-1. 아동 돌봄 지원 강화</p> <p>2-1-① 종일제 보육 접근성 내실화</p> <p>2-1-②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p> <p>2-1-③ 다양한 양육자 지원 강화</p> <p>2-1-④ 맞벌이 부부 등 자녀돌봄 지원 강화</p> <p>2-2.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p> <p>2-2-① 공적 돌봄 인프라 강화</p> <p>2-2-② 가족돌봄자 지원 확대</p> <p>2-2-③ 지역기반의 가족센터를 통한 돌봄지원 확대</p> <p>2-3.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p> <p>2-3-①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개선</p> <p>2-3-② 돌봄노동 전문성 강화</p>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p>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p> <p>3-1.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p> <p>3-1-① 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p> <p>3-1-② 5대 폭력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p> <p>3-2.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p> <p>3-2-① 조직 및 공동체 역량 향상</p> <p>3-2-② 수사·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p> <p>3-2-③ 폭력예방교육 실효성 제고</p> <p>3-3.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p> <p>3-3-①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 마련</p> <p>3-3-② 성·재생산 건강 증진</p> <p>3-3-③ 안전한 피임 접근성 제고</p> <p>3-3-④ 인공임신중절 의료접근권 보장</p> <p>3-3-⑤ 난임 치료·시술 안전성 강화</p>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방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1) '23년 3월 기준 부처명

※ 자료근거 :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3. 3)

〈표 2-32〉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과제별 소관 부처

과 제 명	부 처 명 ^{주1)}
<p>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p> <p>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p> <p>4-1-① 양성평등교육 활성화</p> <p>4-1-② 양성평등한 진로선택 지원</p> <p>4-1-③ 교육 환경 성차별 개선</p> <p>4-1-④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체계 개선</p> <p>4-1-⑤ 양성평등 고등교육체계 기반 마련</p> <p>4-2.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p> <p>4-2-① 공동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p> <p>4-2-② 청년층 내 인식격차 해소</p> <p>4-2-③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수준 제고</p> <p>4-2-④ 여성 문화유산 발굴과 확산</p> <p>4-3. 성별 대표성 제고</p> <p>4-3-① 공공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p> <p>4-3-② 민간부문 성별 균형 참여 확대</p>	<p>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민통합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p>
<p>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p> <p>5-1.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p> <p>5-1-①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기구 기능 강화</p> <p>5-1-② 중앙·지역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강화</p> <p>5-1-③ 시민사회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p> <p>5-2.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p> <p>5-2-① 성인지 정책 내실화</p> <p>5-2-② 공무원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p>	<p>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통계청, 지방자체단체, 각 부처</p>

※ 주1) '23년 3월 기준 부처명

※ 자료근거 : 여성가족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3. 3)

- **부문별**로 검토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31개 사업(1,214억 5,600만원), **평생교육** 부문 2개 사업(16억 7,200만원), **교육일반** 부문 3개 사업(51억 2,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의 성인지예산은 「**평생교육**」 부문(2개 사업)과 「**교육일반**」 부문(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경우, 교육부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제시한 **정책분야**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바,

-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통해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고, 성인지 예산도 대상사업을 이미 정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 서울시교육청 또한 교육부에서 제시한 부문 및 세부사업 이외의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33〉 성인지 예산 부문별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부 문	사업 개수	2 0 2 6		2 0 2 5		증 감	
		예 산 액 (A)	구성비	예 산 액 (B)	구성비	예 산 액 (A - B)	구성비
합 계	36	128,251	100.0	86,716	100.0	41,534	47.9
유아 및 초중등 교육	31	121,456	94.7	80,320	92.6	41,135	51.2
평생 교육	2	1,672	1.3	1,291	1.5	381	29.5
교육일반	3	5,122	4.0	5,105	5.9	17	0.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9

- 성인지예산의 **사업분류별 편성현황**을 검토하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81억 3,500만원(6개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104억 5,000만원(7개 사업), **교육부지정사업** 411억 1,300만원(18개 사업), **자체선정사업** 85억 5,200만원(5개 사업)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34〉 성인지 예산 사업분류별 편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 업 수			예 산 규 모			
	2 0 2 6 ①	2 0 2 5 ②	증 감 ① - ②	2 0 2 6 (A)	2 0 2 5 (B)	증 감 (A - B)	증감률
합 계	36	33	3	128,251	86,716	41,534	47.9
필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6	7	△1	68,135	21,367	46,767
	성별영향 평가사업	7	6	1	10,450	10,070	379
	교육부 지정사업	18	16	2	41,113	47,830	△6,716
선택	자체선정사업	5	4	1	8,552	7,448	1,10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8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의 경우, '25년도에 편성되었던 7개 사업중 '스쿨미투 예방및학교회복지원'(민주시민교육과)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됨

〈표 2-3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주 관 부 서	사 업 명	2026년도	2025년도	전 년 대 비	
		예 산 안 (A)	최 종 예 산 (B)	증감(A-B)	증 감률
합	계	68,135	21,367	46,767	218.9
초 등 교 육 과	늘 봄 학 교 운 영 지 원	59,816	15,217	44,598	293.1
초 등 교 육 과	교 육 활 동 보 호 지 원	5,404	3,530	1,874	53.1
총 무 과	지 방 공 무 원 인 사 운 영	988	1,159	△171	△14.8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	171	152	19	12.9
민주시민교육과	성인권증진및성평등정책	51	51	-	-
민주시민교육과	학 교 안 전 망 구 축	1,703	1,257	445	35.5

- '지방공무원인사운영'(총무과)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신뢰성 높은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성과목표를 '5급 이상 지방공무원 현원 중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여성비율 확대'로 제시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성별 수혜분석에 따르면, '23년도부터 지방공무원 여성 현원(사업대상자)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5급 이상 여성 지방공무원 현원(사업수혜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에도 지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 이는 설정된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를 달성한 결과로 사료되나,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인사 관리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수혜율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36〉 지방공무원인사운영 성인지예산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전 체	사업대상자(A)	6,707명	6,793명	6,840명
	사업수혜자(B)	381명	390명	401명
	수혜율(B/A)	5.7%	5.7%	5.9%
여 성	사업대상자(C)	4,061명(60.5%)	4,169명(61.4%)	4,242명(62.0%)
	사업수혜자(D)	214명(56.2%)	230명(59.0%)	260명(64.8%)
	수혜율(D/C)	5.3%	5.5%	6.1%
남 성	사업대상자(E)	2,646명(39.5%)	2,624명(38.6%)	2,598명(38.0%)
	사업수혜자(F)	167명(43.8%)	160명(41.0%)	141명(35.2%)
	수혜율(F/E)	6.3%	6.1%	5.4%
남성-여성 수혜율 차이		1%	0.6%	0.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 p.63

- '학교안전망구축'(민주시민교육과)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배움터지킴이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 현장에서 성인지적·교육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사료되나,

- 일반적인 배움터지킴이 실의 협소한 근무 공간 특성상 남녀근무자의 근무실 별도 배치 여부, 남녀 휴게실 마련 여부 등의 근무 여건이 마련되도록 세부적인 수요조사와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성별영향평가사업**의 경우, '25년 대비 맞춤형학부모교육(교육협력담당관),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학생역량·혁신교육과), 장애성인평생교육(평생교육과), 통합교육지원(특수교육과), 지역기반교육협력(학생맞춤지원담당관)의 5개 사업을 신규편성하였음

〈표 2-37〉 성별영향평가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주 관 부 서	사 업 명	2026년도	2025년도	전 년 대 비	
		예 산 암 (A)	최 종 예 산 (B)	증감(A-B)	증 감 률
합	계	10,450	10,070	379	3.8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다 문 화 학 생 지 원	4,433	5,466	△1,033	△18.9
유 아 교 육 과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수립	128	128	-	-
교 육 협력 담당 관	맞 춤 형 학 부 모 교 육	263	449	△185	△41.4
학생역량·혁신교육과	독서토론인문소양교육	2,300	1,189	1,111	93.5
평 생 교 육 과	장애 성인 평생 교 육	1,500	1,145	355	31.0
특 수 교 육 과	통 합 교 육 지 원	246	271	△25	△9.5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 역 기 반 교 육 협 력	1,577	1,420	157	11.1

- ‘지역기반교육협력’(학생맞춤지원담당관)의 경우 ’26년도 신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으로, 청소년 자치 배움터 ‘다가치학교’와 ‘다 가치교실’을 지원하고, 학생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여성 청소년의 프로젝트 활동 참여 비율 확대 정도를 측정하는 사업임

- 그러나 소관 부서는 기준 성별 수혜 대상 구분 자료가 부존재하고, 성별 수혜분석이 불가하여 ’23년도부터 누적된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가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 지역기반교육협력 사업 내 ‘다가치학교’는 ’23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24년 지역연계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다가치학교 추진 계획(안)” 수립 시, ’23년 운영성과로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운영 인원과 프로젝트 개수를 토대로 운영 만족도까지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누적된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해당 프로젝트의 성인지 예산서내 성별 수혜분석이 작성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성별영향평가사업** 중 다른 신규편성 사업의 경우, 사전신청 자료, 교육 통계연보,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활용 등을 통해 통계를 추출하여 성별 수혜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지정사업**의 경우,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現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으로 18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 바,

- ‘초등방과후학교운영’(초등교육과)은 공립초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소관 부서는 성별 격차 원인 및 대책으로 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남녀학생의 특성을 모두 반영’, ②‘남녀 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 등의 양성(兩性) 수혜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 성과목표는 ‘공립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여학생 참여율 제고’라는 단성(單性) 목표를 작성한 바, 성별 격차의 대책과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평생학습관지정및운영’(평생교육과)은 지역 거점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하는 예산으로서 평생학습의 남성 참여도를 높여 성별 수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성인지예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료되나,
 - 소관 부서는 성별격차 대책으로 남성 참여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면서도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결국 성별격차 대책을 무용하게 만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38〉 교육부지정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주 관 부 서	사 업 명	2026년도	2025년도	전 년 대 비	
		예 산 안 (A)	최종 예산 (B)	증감(A-B)	증감률
합	계	41,113	47,830	△6,716	△14.0
평생 교육과	평생학습관지정및운영	172	146	26	17.8
유아 교육과	에듀케어운영확대	7,459	7,116	342	4.8
초등 교육과	초등방과후학교운영	3,402	5,094	△1,692	△33.2
초등 교육과	기후변화환경교육	738	829	△91	△11.0
교육연수원	자격연수	1,082	1,078	4	0.4
교육연수원	전문교육	1,125	992	133	13.4
민주시민교육과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195	169	25	15.1
중등 교육과	중등교원연수지원	3,161	2,766	394	14.3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15,966	15,966	-	-
중등 교육과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고)	27	27	-	-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260	260	-	-
특수 교육과	특수교육과정지원	270	270	-	-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2,152	2,065	86	4.2
진로직업교육과	고졸취업지원확대	3,101	5,451	△2,350	△43.1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체육관리	346	3,756	△3,410	△90.8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청소년년단체활동지원	101	101	-	-
진로직업교육과	맞춤식진로교육	697	876	△179	△20.5
학생역량핵심교육과	중등방과후학교운영	853	860	△7	△0.8

- 자체선정사업의 경우, '25년도에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외에 '26년도에 '과학교육센터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 '학생상담센터운영' 3개 사업을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2-39〉 자체선정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주 관 부 서	사 업 명	2026년도	2025년도	전 년 대 비	
		예 산 안 (A)	최 종 예 산 (B)	증감(A-B)	증 감 률
합	계	8,552	7,448	1,104	14.8
창의미래교육과	과학교육센터운영	795	338	456	135.2
학생맞춤지원담당관	학교밖청소년지원	1,310	1,333	△22	△1.7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상담센터운영	1,587	1,121	466	41.6
학교지원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4,395	4,192	203	4.9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운영	463	463	-	-

- '과학교육센터운영'(창의미래교육과)은 교육지원청별 과학교육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메이커·영재 분야 등의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는 사업으로, 과학교육센터 프로그램 여성참가 비율 확대를 성과목표로 제시하였으나, 통계출처가 없고 사업대상자를 서울교육통계로 기재하는 등 예산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위원회는 '25년 6월,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내 성인지 결산서를 검토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참고하여 작성한 「2024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내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요령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교육부에 보완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 교육부에서 발간한 관련 지침에는 성인지 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 유형별 작성 사례와 가이드 등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보완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금번 제출된 서울시교육청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안)」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되나,
- 동 매뉴얼은 주로 ①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서의 E-호조 시스템 입력 방법, ②사업별 작성 방법과 ③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작성 사례, ④유형 구분 등을 명시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특화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지침 또는 매뉴얼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난 '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는 바,
- 관련 지침에 따라 교육청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한 것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6년도에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성과목표, 85개의 단위과제 및 8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제출하였음

〈표 2-40〉 2026년도 성과계획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2 0 2 6 년 도 예 산 안 (A)	2 0 2 5 년 도 본 예 산 (B)	증 감 (A - B)
성 과 계 획	전략목표 수	5	5	-
	성과목표 수	15	25	△10
	단위과제 수	85	84	1
	성과지표 수	81	84	△3
예 산 액	총 예산액 (①)	10,942,206	10,802,671	139,535
	단위과제예산(②)	2,280,378	2,526,484	△246,106
	설정비율(②/①)	20.8	23.4	△2.5

- **성과관리 대상사업** 예산액은 2조 2,803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2조 5,264억 8,400만원)보다 △2,461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예산액은 8조 6,618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8조 2,761억 8,600만원)보다 3,856억 4,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2-41〉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A)	2025년도 본 예산 (B)	증 감 액 (A - B)	2026년도 예산구성비
합 계	10,942,206	10,802,671	139,535	100.0
성과관리 대상사업	소 계	2,280,378	2,526,484	△246,106 20.8
	전략목표 I	1,116,963	1,043,106	73,856 10.2
	전략목표 II	337,203	349,593	△12,390 3.1
	전략목표 III	127,355	110,557	16,798 1.2
	전략목표 IV	649,180	980,021	△330,841 5.9
	전략목표 V	49,675	43,205	6,469 0.5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소 계	8,661,828	8,276,186	385,641 79.2
	인력운영비	7,554,792	7,207,715	347,076 69.0
	기본운영경비	1,079,269	1,031,771	47,497 9.9
	지방채상환	7,458	8,525	△1,066 0.1
	BTL사업비	-	-	-
	예비비 등	20,308	28,173	△7,865 0.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26년도 성과지표는 총 81개로 정량적 측정여부에 따른 분류시 81개 모두 정량지표로 구성되고, 내용에 따른 분류시 투입·과정지표는 5개(6.1%), 산출·결과지표는 76개(93.9%)로 구성하여 제출된 것임

〈표 2-42〉 2026년도 성과지표 설정 및 분류 현황

(단위 : 개, %)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A)	정 량 적 측 정 여 부		내 용					
		정 량	정 성	투 입	과 정	산 출	결 과		
15	81 (100.0)	81 (100.0)	-	1 (1.2)	4 (4.9)	37 (45.7)	39 (48.1)		

※ ()은 성과지표수(A)에 대한 구성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서울시교육청의 성과계획서 중 관련 지침에 따른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를 검토하면,

-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지원사업 만족도'(유아교육과) 등 11개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을 '만족도'로 단일 설정함으로써,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설문문항에 따라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성이 미흡한 성과지표로 사료되는 바, 정량적인 산출지표 또는 결과지표를 병행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만족도'만을 측정방법으로 제시한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를 95% 이상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주관성이 개입되는 '만족도'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2-43〉 '만족도' 만을 측정방법으로 설정한 성과지표 사례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치	정량화	성격	비고
①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지원사업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100	90%	정량	결과	유아교육과
② 중등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응답자 수의 합)×100	92.9%	정량	결과	학생역량 혁신교육과
③ 방송통신중·고 인터넷 콘텐츠 활용 만족도	(방송통신중·고 스마트플랫폼 교원만족도 점수 평균 + 방송통신중·고 스마트플랫폼 학생만족도 점수 평균) / 방송통신중·고 스마트플랫폼 만족도 조사 응답 주체 그룹 수 (교원, 학생)	4.14점	정량	결과	중등교육과
④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제고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100	97.7%	정량	산출	융합과학 교육원
⑤ 교육(지원)청 주관 역사교육 프로그램 교원·학생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100	87%	정량	결과	민주시민 교육과
⑥ 지역연계학교 운영 만족도	(당해연도 지역연계학교 만족도 / 전년도 지역연계학교 만족도)×100	100.5%	정량	결과	학생맞춤 지원담당관
⑦ 학습연구년 운영 만족도	(당해연도 매우만족, 만족 응답자 수 / 응답자 수의 합)×100	96.5%	정량	결과	초등교육과
⑧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만족도	(만족, 매우만족 답변자 수 / 설문조사 참여자 수)×100	90.0%	정량	결과	초등교육과
⑨ 학생대상 성인지 교육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교육만족도조사 참여자 수)×100	86%	정량	산출	민주시민 교육과
⑩ 과대학교 학교보건 지원강사 운영 만족도	(만족 이상 답변 수 / 전체 답변수) ×100	89%	정량	산출	체육건강 예술교육과
⑪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 운영 만족도	(만족 이상 답변 수 / 전체 답변수) ×100	89%	정량	산출	체육건강 예술교육과

○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율’(학생맞춤지원담당관)의 경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착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등록 대안교육기관 수 대비 재정지원기관 수를 명시하였으나,

- 상기 성과지표는 투입지표로써 투입되는 물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달성을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관련 지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을 투입한 결과나 실적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4〉 ‘투입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성과지표 사례

성 과 지 표	측 정 방 법	목표치	정량화	성 격	비 고
① 대 안 교 육 기 관 재 정 지 원 율	(재정지원 기관 수/ 등록 대안교육기관 수) ×100	79.7%	정량	투입	학생맞춤 지원담당관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목표치 설정의 부적정한 사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와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 성과계획서 내 각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근거’를 ①단순 ‘과거 추세치 혹은 전년도 실적(추정치) 반영’ 등을 근거로 설정하거나, ②목표치 설정 근거중 측정산식과 측정방법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목표치 설정 근거가 부적정한 사례인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교육부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과거 사업추진과정 상의 미흡한 점과 개선 노력, 성과제고 방안과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5A〉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근거 부적정 내역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설 정 근 거	비 고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지원사업 만족도	과거 추세치 대비 +2% 조정	유아교육과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양화·특성화 학교비율	(목표치 설정 근거중 측정산식과 측정방법만 작성)	중등교육과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지원대상 학교 확대	(목표치 설정 근거중 측정산식과 측정방법만 작성)	중등교육과
선진형 교과교실제 도입율 및 만족도	과거 실적 고려	중등교육과
중등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25년 실적 고려	학생역량혁신교육과
특수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누적 이수율	'25년 실적 추정치 고려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율	'25년 실적 추정치 고려	특수교육과
학업지속 프로그램 참여자 수	과거 실적 고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 참여율	과거 실적치 대비 +1% 내외 증가	유아교육과
개인정보 암호화 및 현장지원율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창의미래교육과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율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교육연구정보원
수업 개선 중심 교사 학습공동체 수	과거 추세치 참고	학생역량혁신교육과
2026 '생각을 키우는 교실 실천연구팀' 참여율 및 만족도	전년도 실적 고려	초등교육과
교육(지원)청 주관 역사교육 프로그램 교원·학생 만족도	과거 추세치 대비 +2% 조정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자료센터 탐색 콘텐츠 증가율	전년 추세치 대비 +2% 조정	민주시민교육과
혁신학교(혁신미래학교) 성장지원원	과거 실적 고려	학생역량혁신교육과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	과거 실적 고려	진로직업교육과

〈표 2-45B〉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근거 부적정 내역

성 과 지 표	목 표 치 설 정 근 거	비 고
학 교 스 포 츠 클 럽 등 록 률	과거 실적치 고려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 생 건 강 체 력 저 체 력 학 생 비 율	과거 실적치 고려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 습 연 구 년 운 영 만 족 도	전년도 실적 고려	초 등 교 육 과
심 리 상 담 지 원 서 비 스 만 족 도	전년도 실적 참고	초 등 교 육 과
심 리 정 서 위 기 학 생 상 담 활 동	과거 추세치 대비 $\pm 0.1\%$ 조정	민 주 시 민 교 육 과
학 생 정 서 행 동 특 성 검 사 관 심 군 학 생 전 문 기 관 2 차 연 계 을	'25년 연계현황 및 실적 추정치 고려	민 주 시 민 교 육 과
학 교 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학생 예방교육 및 교원 컨설팅·연수 지원	'25년 운영현황 및 실적 추정치 고려	민 주 시 민 교 육 과
교 육 법 률 지 원 단 변 호 사 의 소 송, 행 정 심 판 직 접 (단 독) 수 행 비 율	'25년 운영현황 및 실적 추정치 고려	민 주 시 민 교 육 과
학 생 주 도 재 난 안 전 훈련 확 대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참여학교 수 점진적 확대	안 전 총괄 담당 관
보 도 자 료 언 론 매 체 반 영 률	과거 실적 고려	대 변 인
주 요 매 체 별 홍 보 건 수	과거 실적 고려	대 변 인
학 부 모 사 업 참 여 자 수 증 가 비 율	(목표치 설정 근거중 측정산식과 측정방법만 작성)	교 육 협 력 담 당 관
학 부 모 교 육 자 료 개 발 건 수	과거 실적 고려	교 육 협 력 담 당 관
민 방 위 대 피 훈련 참 여 실 적	과거 실적 고려	총 무 과
사 학 기 관 운 영 평 가 노 력 지 표 평 가 결 과 향 상 도	과거 실적치 대비 $+0.1\%$ 조정	학 교 지 원 과

- 또한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한 지표가 확인되는 바,
- ‘①초·중학교 무상교과용도서 재고율(하향지표)’의 경우, ’25년도 실적(0.8%)보다 성과지표 목표치(1.0%)가 더 높게 설정되었고, ‘②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율’의 경우, ’24년도와 ’25년도의 실적치는 목표를 초과하였으나, ’26년도의 목표치(79.7%)는 지난 2개년도의 실적치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부적정한 목표치 설정 사례로 사료됨
-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성과계획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이 담보된 성과계획이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46A〉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사례

성 과 지 표	실 적 및 목 표 치						검 토 내 용
	구분	'24	'25	'26	'27	'28	
중등방과후학교 운영 만족도	목표	신규	92.9%	92.9%	92.9%	92.9%	4개연도 이상 목표치 동일
	실적	92.9%	92.9%	-	-	-	
①초중학교 무상교과용도서 재고율 (하향지표)	목표	1.5%	1.45%	1.0%	1.0%	1.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0.81%	0.8%	-	-	-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 대상 다문화 (이중)언어강사 배치율	목표	71.25%	71.80%	71.92%	72.20%	72.33%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75.0%	73.0%	-	-	-	
다문화학생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율	목표	70.20%	70.48%	70.58%	70.61%	70.64%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71.02%	71.48%	-	-	-	
②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율	목표	68.0%	70.0%	79.7%	81.7%	82.0%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1.0%	84.2%	-	-	-	
개인정보 암호화 및 현장지원율	목표	97.8%	98.0%	98.2%	98.4%	98.6%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98.9%	98.9%	-	-	-	
수업 개선 중심 교사 학습 공동체 수	목표	260팀	300팀	340팀	350팀	360팀	과거 실적치 이하 목표 설정
	실적	312팀	356팀	-	-	-	

〈표 2-46B〉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미흡 주요사례

성 과 지 표	실 적 및 목 표 치						검 토 내 용
	구분	'24	'25	'26	'27	'28	
학 생 교 육 원 시 설 이 용 률	목표	90.0%	90.0%	90.0%	90.0%	90.0%	4 개 연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0.0%	92.0%	-	-	-	
학 生 1인당 진로체험 참여 횟수	목표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2.23회	2.25회	-	-	-	
학 生 자 치 참 여 예 산 제 학생 회장 공약 사항 이행 및 학생 제안 사업 반영률	목표	74.0%	75.0%	76.0%	77.0%	78.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84.8%	85%	-	-	-	
지 역 연 계 학 교 운 영 만 족 도	목표	100%	100.2%	100.5%	100.5%	100.5%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104%	102%	-	-	-	
심리상담 지원서비스 만 족 도	목표	96.5%	90.0%	90.0%	90.0%	90.0%	4 개 연도 이 상 목 표 치 동 일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7.6%	92.4%	-	-	-	
과 대 학 교 학 교 보 건 지 원 강 사 운 영 만 족 도	목표	86.0%	88.0%	89.0%	90.0%	91.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1.4%	91.5%	-	-	-	
감 염 병 대 응 모 의 훈련 운 영 만 족 도	목표	신규	88.0%	89.0%	90.0%	91.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	98.5%	-	-	-	
콜 센 터 운 영 성 과 지 수	목표	95.4%	95.5%	95.5%	95.6%	95.6%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96.5%	96.5%	-	-	-	
신 규 채 용 교 육 공 무 직 원 직무적응 교육 훈련 이수율	목표	82.0%	83.0%	85.0%	87.0%	89.0%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88.4%	97.5%	-	-	-	
불 법 사 교 육 및 공 교 육 저해요인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 도 · 감 독 실 시 건 수	목표	700건	705건	710건	715건	720건	과거 실적치 이하 목 표 설 정
	실적	733건	733건	-	-	-	

3)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2026~2030)

-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은 유·초·중등교육의 지출계획 및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 교육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중기교육재정계획은 ①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초·중등교육의 투자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②단년도로 끝나지 않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예측하여 전략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기여하며, ③국가의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제도임
 - 관련 법령에서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은 '26년도부터 '30년도 까지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 및 5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 수립을 포함한 것으로,
 -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66조 1,269억원으로 계획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1.2%로 전망한 바,
 -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총 재정규모를 63조 8,510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전망하며, 기금의 경우에는 총 재정 규모를 2조 2,758억원으로 계획하고, 해당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31.6%로 전망하고 있음

〈표 2-47〉 재정규모(총계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총 재정규모	2 0 2 6	2 0 2 7	2 0 2 8	2 0 2 9	2 0 3 0	연평균 증가율
계	661,269	132,396	128,027	128,240	133,614	138,990	1.2
교특회계	638,510	119,470	124,353	126,848	131,674	136,163	3.3
기금 ^{주1)}	22,758	12,925	3,674	1,391	1,940	2,827	△31.6

※ 주1) 기금수입 = 당해연도 기금전입금 + 전년도 예치금회수 + 이자수입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23

○ **세입전망**의 경우, 총 규모 66조 1,269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13조 2,253억원으로 연평균 1.2%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바,

- **이전수입**의 경우, 총 규모 62조 648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12조 4,129억원으로 기타이전수입을 제외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연평균 3.9%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자체수입**의 경우, 총 규모 5,076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1,015억원으로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차입**의 경우, 해당기간중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 전망액이 없으며,
- **기타**의 경우, 총 규모는 9,986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는 1,997억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금융자산 회수 추세를 반영하여 연평균 5.5%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며 **내부거래**는 금번 '26년도 본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을 편성한 이후로는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함
- **기금 수입**의 경우, 총 규모 2조 2,758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4,551억원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3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표 2-48〉 총괄 세입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총 규모	계 획 기 간					연 평 균		
		2026	2027	2028	2029	2030	규모	비증	증가율
계	661,269	132,396	128,027	128,240	133,614	138,990	132,253	100.0	1.2
교특회계	638,510	119,470	124,353	126,848	131,674	136,163	127,702	96.6	3.3
이전수입	620,648	113,981	121,261	123,755	128,580	133,068	124,129	93.9	3.9
자체수입	5,076	1,013	1,014	1,015	1,016	1,017	1,015	0.8	0.1
차 입	0	0	0	0	0	0	0	0	0.0
기 타	9,986	1,676	2,077	2,077	2,077	2,077	1,997	1.5	5.5
내부거래	2,800	2,800	0	0	0	0	560	0.4	△100.0
기금수입	22,758	12,925	3,674	1,391	1,940	2,827	4,551	3.4	△3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23, 재구성

○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의 **세입전망** 중 이전수입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면,

- 이전수입중 **보통교부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는 '23~'24회계연도 세입 실적이 저조한 공통 원인으로, ①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와 ②경기둔화 등에 따른 세수기반 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명시하고 있고,
- '25년 7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에 이어 '26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편성으로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이 전년 대비 △ 3,990억원 감액되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이전수입중 **증액교부금**(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과 관련하여, '25년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의2)가 신설되어 '25년 하반기분에 해당하는 증액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 방식이 사실상 '재량경비 부담'으로 수정되어 정부의 증액교부금 전출 금액 비율이 감소될 것이 예측되는 바, 실

제로 정부는 '26년도에 금년(48.0%)보다 △18.0% 감소한 30.0% 비율로 경비 부담을 예정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이전수입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관련, 최근 시·도·광역시에서 교육청으로 의무 전출 규정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의결되는 등, 서울시교육청 재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전수입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결과적으로 '26년 이후 이전수입이 연 4,841억원, 3.9%씩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것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의 세입전망을 다소 낙관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과거 결산 결과와 법령 정비 현황,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현황 등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분석과 추계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은 정부의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정부의 잠정 통보액 및 지자체와 협의된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세입전망**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적인 추정에는 일부 한계성이 내재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5,351억원을 학교시설개선비로 지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향후 기금까지 소진한다면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지방채 사용 요건까지 도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중기 세출·세입 수요와 기금운용 상황을 기반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 교육재정 운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출전망**의 경우, 총계규모 총 66조 1,269억원에 대해 연평균 규모 13조 2,254억원으로 전망한 바,

〈표 2-49〉 부문별 세출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규모	비중	증가율
계	661,269	132,396	128,027	128,240	133,614	138,990	132,254	100.0	1.2
유아 및 초중등교육	295,730	59,255	59,320	56,665	58,666	61,821	59,146	44.7	1.1
평생교육	1,607	306	314	320	328	336	321	0.2	2.4
교육일반	44,066	10,927	6,020	7,521	9,450	10,145	8,813	6.7	△1.8
예비비	1,201	240	240	240	240	240	240	0.2	0.0
인건비	318,663	61,666	62,130	63,491	64,927	66,447	63,733	48.2	1.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32, 재구성

- **인건비**(전체의 48.2%)는 31조 8,663억원 규모로 연평균 1.9%, **유아 및 초 · 중등교육**(전체의 44.7%)의 경우, 29조 5,730억원 규모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임
- **교육일반**(전체의 6.7%)은 4조 4,066억원 규모로 연평균 △1.8% 감소하고, **예비비**(0.2%)는 1,201억원 규모로 매년 일정 규모를 유지하며, **평생교육**(0.2%)은 1,607억원 규모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총 191개 사업, 6조 4,732억원의 재정투자심사 대상 연도별 투자계획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음

〈표 2-50〉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 반영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계획							
				계	2026	2027	2028	2029	2030	향후	
계	191	64,732	16,241	48,491	7,011	10,000	10,982	10,846	6,799	2,853	
진로진학교육	1	43	0	43	7	7	7	7	7	8	
학교급식환경개선	12	587	73	514	253	135	87	19	20	0	
학교신증설	24	19,370	13,108	6,262	1,839	1,766	1,039	1,386	231	1	
학교시설확충	27	2,501	531	1,970	614	554	316	377	109	0	
학교시설환경개선	112	37,913	1,943	35,970	3,867	6,842	9,031	8,497	6,224	1,509	
시설사업운영	1	289	3	286	20	80	106	80	0	0	
기관시설유지관리	14	4,029	583	3,446	411	616	396	480	208	1,33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45, 재구성

- '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확정된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의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 반영수(166개) 보다 25개, 총 사업비(5조 1,959억원)는 1조 2,773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26년부터 계획된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신규 선정 후보학교 22개교의 사업 물량을 추가 반영한 것이 주요 사유로 검토됨
- 아울러 '25년 9월, 교육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지침 중 자체투자심사 대상과 심사시기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 바 있어, 각 사업부서는 변경된 재정투자사업 대상과 연동하여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누락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경우,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하여 5개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며, **신청사 건립기금** 4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1,149억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 38억원,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1,526억원, **생태전환교육기금** 4억원을 포함한 총 규모 2조 2,758억원으로 전망한 바,

〈표 2-51〉 중기 기금수입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총 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규모	증가율
계	22,758	12,925	3,674	1,391	1,940	2,827	4,551	△31.6
신청사 건립기금	40	40	0	0	0	0	8	△10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149	8,804	2,345	0	0	0	2,229	△100.0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0,038	3,841	1,067	1,093	1,599	2,435	2,007	△10.8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526	234	261	298	340	391	305	13.6
생태전환교육기금	4	4	0	0	0	0	1	△1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p.27, 재구성

- **신청사건립기금**의 경우, '25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7년 12월까지 연장하였음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6년 1~5월중 서울시교육청의 청사를 이전하고, 하반기중 사업비와 기금을 정산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27년도 이후는 기금을 운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6~'27년도 중 기금 보유액 전액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6년도 본예산의 세입 보전을 위해 2,800억원을 교특회계로 전출하고, 이후 조성되는 기금 잔액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지난 '23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이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 2023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기금 폐지 후 정산이 필요한 재원을 예치하고만 있어 사실상 기금에 대한 지출을 계획하지 않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중기기금운용계획도 연동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위원회에서는 '25년 6월,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며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의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결과 및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사항 등 다양한 예산 수요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이 부재하여, 향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금번 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의 경우, 「2026~2030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민의견 수렴 개요, 시민의견 공론 결과, 정성의견 분석 결과, 시민토론 및 투표 등을 근거로 조사한 정책적 수요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 시교육청 또한 현재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 및 서울교육재정 심의위원회 의견 수렴 결과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6~2030)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①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교육부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5년간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 계획기간중 **총 취득규모**는 65건, 1조 5,612억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총 처분규모**는 35건, 1,056억 6,900만원으로 계획하여 제출한 것임

〈표 2-52〉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취득	5	29,241	46	1,261,713	10	162,494	1	3,204	3	104,578	65	1,561,230	64.4
처분	2	78	28	100,006	3	2,303	-	-	2	3,282	35	105,669	1,026.9
사용 허가	136	2,216	135	2,219	134	2,272	134	2,313	132	2,368	671	11,388	1.7
대부	264	548	264	558	264	572	264	585	264	597	1,320	2,860	2.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p.3, 재구성

- **취득**은 전체 65건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등에 따른 증·개축 54건, 신설 5건, 기부채납 1건, 이전(재배치) 3건, 토지교환 1건, 기타(복합화) 1건인 것으로 확인되며,
- **처분**은 전체 35건중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33건,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교환 1건, 이전 1건인 것으로 확인된 바,
- 향후 '27년도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물량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의 수량 및 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제출됨

- 관련 법령 및 교육부의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을 검토하면,
 -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 바, 특례 종합계획중 대부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한 여명학교의 대부료 감면의 경우, 그 근거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표기하고 있으나,
 - 해당 조례의 조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도 조례에 효력을 위임하고 있어 감면 근거를 「조례」만 표기한 것은 시행령을 통해 조례로 위임된 것을 마치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관련 근거의 명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임
-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예산안중 예산총칙 제4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바,
 - '25년도 세출예산중 사업추진시 장애발생 및 사업비부족 등의 사유로 53건, 184억 1,6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명시이월 요청액 규모는 '25년도(583억 600만원) 대비 $\triangle 68.4\%$, $\triangle 398억 8,900$ 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2-53〉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연 도	예 산 액	명 시 이 월			전 년 대 비	
		건 수	금 액	비 율	증 감	증 감 률
2026	11,799,251	53	18,416	0.2	$\triangle 39,889$	$\triangle 68.4$
2025	12,448,668	88	58,306	0.5	$\triangle 205,185$	$\triangle 77.9$
2024	13,785,862	520	263,491	1.9	$\triangle 62,414$	$\triangle 19.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명시이월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①사업추진 기간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은 53.1%, 97억 8,600만원, ②사업추진시 장애발생 25.6%, 47억 1,000만원, ③사업비 부족 21.3%, 39억 2,100만원으로 확인됨

〈표 2-54〉 명시이월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계	① 사 업 추 진 기 간 부 족	②사업추진시 장애 발 생	③사업비부족	④ 기 타
건 수	53	18	19	16	-
이 월 액	18,416	9,786	4,710	3,921	-
구 성 비	100.0	53.1	25.6	21.3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사업추진 기간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은 18건, 97억 8,6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① **인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사업**(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우, 30억원의 예산중 29억 1,800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요청한 것으로, '25년 10월, 계약 검토 후 계약심의를 요청하여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대상 공사의 연내 조달청 계약추진 시 공사계약 조달요청서 마감기한에 따른 연도내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어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② **창도초 본관동 및 동관동 기계실소방설비 및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 탐지설비개선**(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25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3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25년 7월, 창도초에서 동 사업을 '27년 1~2월중 내진보강공사와 함께 추진하기를 희망하여 금번 본예산안을 통해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법령은 명시이월의 가능 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부서는 명시이월 사유에 다다음 회계연도인 '27년도로 사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금번 본예산안을 통해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이다,

- 명시이월이 2개년도에 이월되는 사안도 아니며 명시이월의 취지와 맞지 않아 동 명시이월 요청건은 삭제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다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55〉 사업추진 기간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12,478	9,786	
1	① 인현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 사업	3,000	2,918	조달청 계약 추진 시, 2025년 공사계약 조달요청서 마감기한에 따른 연도 내 계약체결이 불가
2	중앙고 학교 환경개선	1,849	932	외부공사(외벽, 방수, 도로포장 등)를 동절기에 진행 불가
3	월계중 운동장환경개선	1,350	802	하반기 공모 선정된 학교로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4	문창중 교사 드라이비트 해소	820	788	내진 및 화장실 개선 공사 완료 이후 추진
5	인수초 후관 드라이비트 해소	882	782	현재 급식시설 이전계획이 있어 이전공사가 완료된 후 드라이비트 해소를 실시 예정
6	장월초 본관 개선	1,357	774	학사일정에 따라 서측은 2025년도 겨울방학, 동측은 2026년도 겨울방학 추진 예정
7	우신고 체육관 개설	400	400	체육관 증축 진행 절차가 지연되어 연내 착공 불가능
8	② 창도초 본관동 및 동관동 기계실소방설비 및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개선	385	385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하여 학교 요청으로 27년으로 사업 연기
9	영파여중 설계비	347	347	설계 용역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 26년 집행예정
10	구남초 급식실전면개선	358	326	설계협의기간 소요 및 급식컨설팅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 불가능
11	영파여중 임시교사 임차료	300	300	설계 용역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 26년 집행예정

※ 3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사업추진시 장애발생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은 19건, 47억 1,0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①서울백영고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교육시설관리본부)와 ②창일중 양궁부 사대 및 교사동 샌드위치 패널 해소(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내진보강 간섭공종 사업으로 설계 검토 등을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것으로,
- 드라이비트 해소를 비롯한 외벽 개선공사, 외부창호 개선공사, 샌드위치 패널 해소 공사 등은 내진 보강공사와 연계성이 높아 서로 간섭되는 사업이므로 소요예산 편성시 미리 내진보강대상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2-56〉 사업추진시 장애발생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6,852	4,710	
1	①서울백영고 본관 드 라 이 비 트 해 소	1,139	1,139	내진보강사업 설계진행중이며, 드라이비트해소 공사와 간섭사항이 있어 병행사업으로 진행 계획
2	경인중 운동장환경개선 및 배수시설개선	770	731	운동장 공사 시 학교 체육 수업 불가로 인한 연기 요청 및 외부공사로 굴착물, 공사 중지
3	선사고 운동장환경개선 및 배수시설개선	527	527	학교장 요청에 따라 2026년 여름방학 추진 예정
4	②창일중 양궁부 사대 및 교사동 샌드위치패널해소	400	394	내진보강 사업과 간섭 예상되어 내진보강 사업과 병행추진 필요, 석면 제거 사업 선행 필요
5	혜 원 여 고 운 동 장 환 경 개 선	370	370	주차장 공사로 관련 자재 및 가설 사무소 컨테이너등을 운동장에 보관해야하는 상황으로 인해 공사시기 조정중
6	창북중 운동장환경개선 및 배수시설개선	310	310	학교장 요청에 따라 2026년 여름방학 추진 예정

※ 3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한 사업은 16건, 39억 2,100만원으로 제출되었음

- 강동고 본관동 체육관(강당) 개선(교육시설관리본부)의 경우 설계 검토 결과, 준공 후 안정적인 시설물 사용을 위해 수배전시설 개선 및 계약전력 승압 공사가 추가로 필요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비 부족**을 원인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경우는 ①예산 편성시 관련 법령의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②공사 범위를 누락하거나, ③공사 중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로 사료되는 바,
- 향후 예산 편성시 공사중 필요한 소요액을 정밀 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범위와 관련 기준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한 이후 소요예산을 편성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57〉 사업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요청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계	3,926	3,921	
1	경신중 본관동 특별교실 증축	816	816	사업비 부족으로 26년 추가 예산마련 후 집행 예정
2	강동고 본관동체육관 (강당) 개선	739	739	설계 검토 결과 수배전시설 개선 및 계약전력 승압 공사 병행 필요 26년 추가 예산 마련 후 집행 예정
3	진선여고 체육관 증축	648	648	사업비 부족으로 26년 추가 예산 마련 후 집행 예정
4	우신중 시청각실 증축	463	463	물량증가 필요로 26년 추가 예산 마련 후 집행 예정

※ 3억원 이상 사업내역만 표기(합계는 해당 사유 전체 이월 규모임)

-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해 예산의 이월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 결산을 통해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는 사고이월에 비해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존중하고자 사전의결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제도 시행의 취지가 있음
 - 다만, 이월 사유 대부분이 사업추진 기간부족, 사업추진시 장애발생 등 사업 지연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의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시이월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요재원의 한정성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는 명시이월 보다는 불용 처리 후 예산을 다시 편성요청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각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매년 구분하여 발간하고 있으나, 이중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명시이월의 정의와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실·국별 세부사업 검토

1) 총무과

□ 본청기관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1)

○ **본청기관운영비**는 본청 기관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및 시설유지 보수관리비 등으로 '26년 3월, 청사 이전 후에도 현청사에 일부 부서가 잔류하고 타기관이 이전하여 일부를 사용하게 될 예정으로 신청사와 현청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금년도(30억 7,700만원) 보다 127.0%, 39억 600만원을 증액한 69억 8,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8〉 본청기관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증 감 (C = A - B)	증 감률 (C / B)
계	6,983	3,077	3,906	127.0
① 본 청 기 본 운 영 비	3,635	2,531	1,104	43.6
② 청 사 시 설 유 지 관 리	3,348	545	2,802	513.4

- 사업내용중 ①**본청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차량 및 주차관리, 청사방호 비용 등으로 금년도 최종예산(25억 3,100만원) 보다 11억 400만원 증가한 36억 3,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공공요금의 경우, 상하수도, 전기·전화요금, 케이블TV수신료 등 신청사와 현청사 관리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금년도 최종예산(16억 8,600만원) 보다 13억 1,000만원 증액한 29억 9,600만원으로 제출됨

- ② 청사시설유지관리는 신청사 시설관리위탁용역비(25억 1,400만원), 신청사 및 현청사 사무실 재배치경비(1억 5,500만원) 등을 포함한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금년도 최종예산(5억 4,500만원) 보다 28억 200만원 증가한 33억 4,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신청사 시설관리위탁용역비는 청소, 시설관리, 당직을 일괄하여 용역으로 위탁하고자 25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무실 재배치경비, 건물유지비, 소방·전기시설점검료, 폐기물처리비용 등 시설 유지관리비는 신청사와 현청사 시설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2억 8,8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계획”에 따르면, 현청사(본관동, 보건안전진흥원, 별관동)에는 중부교육지원청, 보건안전진흥원, 교육연구정보원, 본청 부서 소관 각종 센터 등이 이전할 예정으로 각 기관의 사무공간 구축과 이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등)를 ’27년도 3분기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 각 기관의 구축과 이전이 완료될 예정인 ’27년도 3분기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신청사와 현청사를 함께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27년도에도 청사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향후 각 기관 이전 후에는 현청사를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공공요금, 시설·설비(전기, 기계, 소방 등)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경비 분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기획조정실

□ 학교지원전담기구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11)

- 정책기획관 소관 **학교지원전담기구운영**은 학교업무 경감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한 학교행정지원센터를 확대하여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함에 따라 부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8억 2,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59〉 학교지원전담기구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2,828	850	850	1,978	233.1
① 학 교 통 합 지 원 과 운 영	2,828	487 ^{주1)}	487 ^{주2)}	2,341	480.7
학 교 통 합 지 원 سن 터 운 영 지 원	-	362	362	△362	순감

※ 주1), 주2) '25년도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비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년 7월, 학교행정지원 전담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한 바,
- ①**학교통합지원과운영**은 11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과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기간제인건비 등을 포함한 28억 2,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청별로 약 2억 5,500만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학교공통 이관업무, 신규 발굴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수당, 공통 위탁용역비 등 운영비 2억 4,600만원과 기간제 인건비 600만원(인건비, 민간이전), 업무추진비 380만원으로 확인됨

〈표 2-60〉 학교통합지원과운영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2,828	
인 건 비	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간제인건비 59,741천원(지원청)</u> - $((12,570\text{원} \times 8\text{시간} \times 27\text{일}) \times 2\text{월} \times 1\text{명}) \times 11\text{청}$
운 영 비	2,7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2,713,172천원 - <u>지원청(11청): 2,705,822천원</u> (학교인력채용심사수당, 수질검사, 교과서배부용역비 등) - 본청: 7,350천원 (운영공유및평가회, 네트워크운영비 등)
업 무 추 진 비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지원청(11청): 41,800천원</u> ○ 본청: 7,000천원
민 간 이 전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민간이전 6,875천원(지원청)</u> - 지원청(11청) 기간제근로자 보험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12~313, 재구성

- 사업부서의 “학교통합지원과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통합지원과의 업무는 ①남부 행정지원센터에서 업무경감 효과 검증된 업무(8종), ②신규발굴 업무(4종), ③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이관된 업무(8종)로,
 - 학교통합지원과의 3개 통합지원팀에서 학생 교육 · 안전관리, 교직원 대체 인력관리, 공통 위탁용역 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26년도에도 지역별 현안 특성에 맞는 업무발굴과 이관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학교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추가 발굴에 따라 향후에도 소요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45)

-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예산과목이며 세부사업임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경우 편성한도 없이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10조 9,422억 700만원)의 0.14%, 15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50억원을 계상하여 '25년도 예비비 최종예산(311억 6,900만원)보다 △35.8%, △111억 6,900만원 감액된 2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1〉 예비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20,000	28,169	31,169	△11,169	△35.8
일반예비비	15,000	23,109	23,109	△8,109	△35.1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0	5,060	8,060	△3,060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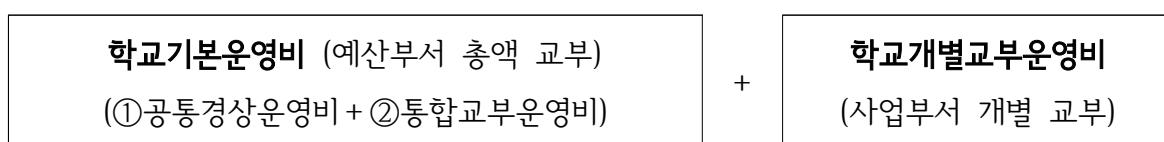
- '26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청된 예비비는 ①일반예비비 편성규모가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로 법령상의 기준은 충족하나, ②'25년 10월 현재, 예비비가 80억 2,600만원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예비비가 적정한 규모로 편성된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경우에는 하반기 초과지출이 예상되어 '25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50억 6,000만원) 보다 30억원을 증액한 8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5년 10월, 현재 집행률이 45.7%로 확인되는 바,
- 교육부의 관련 지침 따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비비중 불용액 발생 규모가 큰 것은 결국 여유 자금을 예비비에 비축하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므로 예비비가 적정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립학교운영비

- **학교기본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86)
 - **학교개별교부운영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73)
- 예산담당관 소관 **공립학교운영비**는 서울시 관내 1,280개교의 운영을 위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①**학교기본운영비**와 특정 수요가 있는 학교에 개별 교부하는 ②**학교개별교부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표 2-62〉 '26년도 학교운영비 편성구조



- **공립학교운영비**는 금년도 최종예산(7,226억 800만원)보다 2.3%, 164억 9,500만원 증액한 7,391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63〉 공립학교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B)
		본예산	최종예산(B)		
계	739,104	722,608	722,608	16,495	2.3
① 학교기본운영비	677,387	663,586	663,586	13,801	2.1
② 학교개별교부운영비	61,717	59,022	59,022	2,694	4.6

- ①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학교가 기본적 교육활동, 공공요금, 시설관리 등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필수경비로, ① 공통경상운영비와 ② 통합교부운영비를 합하여 총 6,773억 8,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6,635억 8,600만원) 보다 2.1%, 138억 100만원 증액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2-64〉 학교기본운영비(공립) 편성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증 감 (C = A - B)	증감률 (C/B)
(①+②) 학교기본운영비	677,387	663,586	13,801	2.1
① 공통경상운영비	560,903	554,507	6,395	1.2
② 통합교부운영비	116,483	109,078	7,405	6.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① 공통경상운영비는 공공요금·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6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6년도의 경우, 단위학교별 ① 공통경상운영비는 공립 1교당 '25년도 대비 0.8% 증가된 평균 4억 3,8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검토됨

- ⑦ **공통경상운영비** 총액은 전년대비 1.2% 증액(63억 9,500만원) 편성 요청된 것이나, 단위학교별로는 '25년도 최종예산 보다 평균 400만원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검토됨

〈표 2-65〉 최근 3년간 공통경상운영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최종예산	2024년도 최종예산
공통경상운영비 총액	560,903	554,507	534,850
지원학교 수 ^{주)}	1,280	1,275	1,271
평균 공통경상운영비	438	434	420
증감률	0.8	3.4	0.6

※ 주) 2026학년도 지원학교 수 변경사항(증 5교)

- 신설 2교('가칭'신암초병유, '가칭'흑석고), 재개교 3교(반포초, 신화중, 금호여중)

- ① **통합교부운영비**는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목적성사업(신규 사업 포함)중 학교운영비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포함시켜 산업(중대)재해 예방체계구축, 학생안전체험교육 및 기자재 지원 등 28개 사업에 74억 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제출되었음

○ ② **학교개별교부운영비**는 해당 학교별 특정수요가 있는 운영비를 산정한 후 사업부서에서 학교실정에 맞게 개별 지원하나, 목적사업비와 달리 집행잔액을 정산하거나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과학교육센터 운영,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운영 등 25개 사업에 617억 1,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사업중 신규 추가된 “기계설비유지관리”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 m^2 이상 공립학교 537교에 ⑦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선임비용(비상 주)과 ⑧기계설비 성능점검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연면적당 지원금액을 차등적용하여 편성 예산을 제출한 것임

- 지난 '20년 6월 시행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1만 m^2 이상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25년 7월, 현재 대상학교 715교 중 707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자체(571교) 혹은 위탁선임(136교)하였으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자체선임한 학교(571교)중 434교가 법정 선임 특례를 활용하여 임시 자격이 있는 교직원으로 관리자를 선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 '26년 4월, 특례 종료에 따라 정식 자격자 선임이 필요한 것으로 선임 자격의 전문성이 높아 학교에서 내부 직원으로 관리자를 선임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위탁용역비(비상주)와 기계설비 성능 점검비용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대상학교 공·사립 715교 중 공립학교 537교는 학교운영비중 '개별 교부운영비'로 67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수업료 자율학교 29교를 제외한 사립학교 149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환경개선사업비)'으로 18억 5,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연간 약 86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비상주 위탁선임하는 경우 학교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인 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자격자 양성,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학교 직원으로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용역 비용을 절감하고, 학교 기계설비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66〉 통합교부운영비 편성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항목	2 0 2 6	2 0 2 5	증감액
	계	116,483	109,078	7,405
1	학교자치활성화지원 ^{주 1)}	1,950	-	1,950
2	학생맞춤통합지원운영 ^{주 2)}	2,952	-	2,952
3	산업(중대)재해예방체계구축	6,149	4,079	2,069
4	학생안전체험교육및기자재지원	975	968	6
5	교육과정자율운영영역지원	11,781	11,592	189
6	학교학부모회운영지원	1,289	1,281	9
7	교육지원팀교사수업시수경감	4,232	4,219	13
8	정보교육실습비지원	780	774	5
9	과학실안전장비및실습기자재구입	1,920	1,870	50
10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	3,079	2,082	997
11	유치원학습자료구입및현장학습	2,807	2,827	△20
12	학습준비물구입지원	12,611	13,193	△582
13	학생참여형수업지원	7,723	7,918	△195
14	학교자유학기제운영	4,324	4,121	202
15	배움터지킴이운영	9,069	9,024	45
16	학교폭력책임교사수업시수경감	3,567	3,541	25
17	학생자치참여예산제	2,277	2,217	59
18	WEEL클래스운영	1,476	1,465	10
19	취업기능강화운영	69	69	-
20	중학교찾아가는직업계고진학설명회	41	41	0
21	초등수영교육	6,130	5,717	412
22	중학교학교스포츠클럽강사비	5,650	5,630	20
23	초등예술하나	9,905	10,666	△761
24	중등협력종합예술활동지원	1,395	828	567
25	학생예술동아리지원	234	138	96
26	생태습관질환진단비지원	1,968	1,954	14
27	특수학교자유학기및교학점제운영	242	242	-
28	청소년용역비지원	11,883	12,615	△732

※ 주1) 목적사업에서 전환

※ 주2) 신규사업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806 ('25.10.21), “2026회계연도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안)”

〈표 2-67〉 개별교부운영비 편성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사 업 항 목	2 0 2 6	2 0 2 5	증 감 액
	계	61,717	59,909	2,694
	교과용도서구입및배부지원 ^{주1)}	-	10,116	△10,116
	서울독서교육지원센터운영비 ^{주2)}	-	19	△19
1	과 학 교 육 센 터 운 영	25	-	25
2	미 래 용 합 형 수 학 교 실 운 영	30	-	30
3	수 학 과 학 융 합 교 육 센 터 운 영	10	-	10
4	특 수 학 급 방 과 후 활 동 지 원	4,830	-	4,830
5	학 교 공 기 청 정 기 관 리 비	940	-	940
6	교 육 과 정 평 가 지 원 센 터 구 축	19	-	19
7	기 계 설 비 유 지 관 리	6,756	-	6,756
8	통 합 운 영 학 교 운 영	45	-	45
9	개교경비및개축학교이전경비지원	1,650	1,124	525
10	특수학교통학버스운영비지원	3,916	3,916	-
11	항공소음피해학교운영비지원	176	160	16
12	교 육 복 지 학 교 사 업 비	4,204	4,818	△614
13	과 학 고 및 영 재 학 교 운 영	1,472	1,472	-
14	혁 신 학 교 운 영 비	9,109	9,996	△887
15	방 송 통 신 중 고 운 영	1,345	1,453	△106
16	일 반 고 교 학 검 제 운 영 지 원	9,135	9,116	19
17	마 이 스 터 고 운 영 비	700	700	-
18	미 래 기 술 교 육 센 터 활 성화	60	60	-
19	실 험 실 습 재 료 비 지 원 확 대	1,250	1,250	-
20	특 수 운 영 직 미 화 원 인 건 비	6,883	6,953	△69
21	특 수 돌 봄 교 실 지 원	534	447	87
22	특수학급운영비및유아교육비	7,946	7,690	256
23	특 수 교 육 지 원 센 터 운 영	170	170	-
24	통 합 형 직업교육거점학교	258	246	12
25	가고싶은학교머물고싶은학교	250	200	50

※ 주1) 교육지원청으로 업무 이관 주2) 사업폐지

※ 연번 1~5 : 목적사업비에서 전환(5개), 6~8 : 신규사업(3개)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806 ('25.10.21), “2026회계연도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안)”

□ **공무원(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17)

- 예산담당관 소관 **공무원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를 편성한 것으로 '26년도 소요액 4조 8,397억 7,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68〉 **공무원(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6 년 도 예 산 안 (A)	2 0 2 5 년 도 최종예산 (B)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계	4,839,779	4,678,182	161,597	3.5
보 수	3,612,968	3,507,810	105,157	3.0
법 정 부 담 금	1,059,771	1,006,118	53,652	5.3
명 예 퇴 직 수 당	85,500	92,150	△6,650	△7.2
맞 춤 형 복 지 비	81,540	72,102	9,437	13.1

- **보수**의 경우, ①'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3.5%) 적용에 따른 증가분과 ②'26년도 정원 증감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1,051억 5,700만원 증액된 3조 6,129억 6,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법정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예산에 비례하는 부담금인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건강보험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26년도 법정부담금 요율인상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536억 5,200만원이 증액된 1조 597억 7,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명예퇴직수당**은 공립 교원, 교육전문직원 및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 수요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855억원을 편성 요청한 바,
 - ①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810명분(유치원 5명, 초등 425명, 중등 380명), 810억원, ②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0명분, 40억원, ③교육전문

직원 명예퇴직수당 4명분, 5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보다 $\triangle 66$ 억 5,000만원 감액된 855억원을 편성한 것임

-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②근속점수, ③가족점수, ④출산축하점수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나, ①기본점수(110만원)는 교직원 사기 진작, 타 기관과의 차이 해소를 위해 20만원(900점→1,100점)을 인상하고 직종별 편성 인원증감 ($\triangle 585$ 명)을 반영함에 따라 금년도 최종예산(721억 200만원) 보다 94억 3,700만원 증액된 815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69〉 2026~2025년도 맞춤형복지비 구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① 기 본 점 수	②근속 ^{주1)}	변동복지점수										
			③ 가족					④ 출산축하			검진	난임원	태산검
			배우자	직계존속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격년제	해당자	아모진
'26년	1,100	최대 350	200	100	100	200	300	1,000	3,000	5,000	200	500	100
'25년	900	최대 350	200	100	100	200	300	1,000	3,000	5,000	200	500	100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19

※ 주1) '26년도 근속점수 부여방식(10년차까지 100점, 11년차부터 10점씩 누적)

- 교육전문직원 인건비의 경우, '26년 늘봄학교 사업추진을 위해 정원 증원을 요청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소요액을 예산안에 미리 편성 요청한 것이나,

- 지난 '25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소관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70〉 '26년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편성 인원

(단위 : 명)

구 분	본 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 교 (늘봄실장)	정원 증원 (늘봄실장)	정원합계 (A)	편성인원 (B = A)
계	190	80	337	154	112	873	873
장학관	48	-	60	-	-	108	108
장학사	142	-	277	-	-	419	419
교육연구관	-	21	-	-	-	21	21
교육연구사	-	59	-	154 (임기제)	112 (임기제)	325	32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047 ('25.10.27)

□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326)

- 예산담당관 소관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는 396억 8,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①지방공무원 결원시 대체 인력 지원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②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이행을 위한 장애인근로자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을 편성 요청하는 것임

〈표 2-71〉 계약제근로자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6 년 도 예 산 안 (A)	2 0 2 5 년 도 최 종 예 산 (B)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계	39,686	35,916	3,769	10.5
① 지 방 공 무 원 대 체 인 건 비	14,880	14,610	269	1.8
② 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운영	24,806	21,305	3,500	16.4

- ①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는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에 1일 이상 지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생활임금을 시간당 단가로 책정하여 대체인력인건비(보수, 법정부담금, 퇴직금)를 지원하는 것으로

- '26년도 편성인원은 금년도 보다 △10명 감소하였으나, 생활임금은 금년도 보다 430원 인상되어 금년도 최종예산(146억 1,000만원) 보다 1.8%, 2억 6,900만원 증액된 148억 8,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됨

- ②장애인고용의무제 관련운영은 ⑦장애인근로자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135억 5,400만원)와 관련 법령에 따른 ⑧장애인고용부담금 소요액(112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213억 500만원) 보다 16.4%, 35억원 증액된 248억 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2〉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24,806	
⑦ 장애인근로자 인건비지원	13,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954,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근로자인건비(행정기관) 1,500천원×12월×53명 ○ 인건비 12,6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근로자인건비(공립학교) 1,500천원×12월×700명
⑧ 장애인고용부담금부	11,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11,252,10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부담금(근로자) 1,258천원×3월×5명 - 장애인고용부담금(공무원) 1,333천원×12월×702명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28, 재구성

- ⑧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가 법정의무고용률(3.8%)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지난 '16년도에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20년도부터는 장애인 '공무원'의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나, 시행

일로부터 3년간('21년부터 '23년도 납부분까지)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받아 납부하였음

- 그러나 '24년도 납부분부터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하여 감면없이 고용부담금 전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근로자·공무원) 예산편성액은 금년도 최종예산(79억 9,400만원) 보다 40.8%, 32억 5,800만원 증액된 112억 5,2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근로자'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으나,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고용률과 부담금액이 '월별'로 산정되고 있어, 방학 등 특정기간(3개월)에 의무고용률이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고용부담금 1,800만원을 편성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과 교원의 장애인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장애인 고용률이 산정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으나,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112억 3,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교원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입학정원이 적고, 교원 신규채용 시 의무고용률(3.8%)의 2배(7.6%)이상을 장애인 구분모집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합격률이 저조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5년 2월,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교원 신규 임용 선발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제도를 통해 부담금 경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금년도에는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25년도 고용부담금 납부금액 79억 5,500만원의 일부인 21억 4,800만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향후에도 고용부담금 감면 노력과 더불어 교육청이 장애인공무원의 선발을 장려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교육청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고용부담금 납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23~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예산 편성 현황을 검토하면, 매년 고용부담금 납부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조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고용의무 미달인원'과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을 곱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각 기관의 '월고용의무 미달인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일부 한계가 있을 것이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37)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소관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운영**은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종료후 '23년도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사업으로 금년도(52억 4,500만원) 보다 33.8%, 17억 7,000만원 증액된 70억 1,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3〉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B)
		본 예 산	최 종 예 산 (B)		
계	7,016	2,591	5,245	1,770	33.8
①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5,140	-	-	5,140	순증
② 지역연계 교육활동 운영	1,875	-	-	1,875	순증
교육후견인제 운영	-	171	325	△325	△100.0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단체등협의체운영	-	8	8	△8	△100.0
③ 자치구특화프로그램 운영	-	966	3,466	△3,466	△100.0
④ 지역사회연계 미래교육과정 운영	-	1,445	1,445	△1,445	△100.0

※ 사업구조를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에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운영'으로 변경하여 기존 ③,④ 사업은 폐지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①, ② 사업이 신설됨

-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운영**은 교육청(지원청)과 자치구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 '26년도부터는 사업명을 “서울미래교육지구”에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고자, 지난 '25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25.12.17)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①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운영은 ⑦자치구교육협력특화사업(50억원)과 ⑮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51억 4,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⑦자치구교육협력특화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50억원(자치구당 2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25년 6월,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치구당 1억원을 교부하고자 25억원을 증액한 바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해당 자치구에서 전입되는 재원 규모와 연동하여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된 부대의견이 있었음 그러나 자치구에서 동 사업에 대한 자체투자 예산을 이미 확정한 상태였기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지 않고 자치구당 1억원을 균등하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됨
 - '26년도에도 자치구별 2억원을 균등하게 교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자치구 대응투자 예산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노력 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예산을 차등 교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입학준비금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61)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소관 **입학준비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 소재 관내 학교 신입생(학부모)에게 교복 또는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여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26년도 입학준비금 지원단가는 금년도와 동일하나(초 20만원, 중·고 30만원), 지원대상인 초·중·고 신입생 수 감소 등으로 금년도 최종예산(516억 7,300만원) 보다 △1.2%, △6억 3,000만원 감액된 510억 4,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4〉 입학준비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산	최종예산(B)		
계	51,149	51,734	51,734	△584	△1.1
입 학 준 비 금	51,042	51,673	51,673	△630	△1.2
입 학 준 비 금 지 원	106	61	61	45	74.4

- '26년도 편성액(510억 4,200만원)은 교육청·서울시·자치구 분담비율에 따라 교육청 245억 6,700만원, 서울시 153억 1,200만원, 자치구 111억 6,200만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75〉 입학준비금 재원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계	51,042	51,673	△630	△1.2
입 학 준 비 금 (교 육 청)	24,567	24,831	△263	△1.1
입 학 준 비 금 (서 울 시 전 입 금)	15,312	15,501	△189	△1.2
입 학 준 비 금 (자 치 구)	11,162	11,340	△177	△1.6

○ 동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청 자체 재원과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복지성 수혜금에 해당되어 관련 지침에 따라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 지난 '24년 11월,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7년도부터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비율' 즉, 현금 기반 복지성 수혜금 지출비율이 큰 상위 8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0억원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인 바,
- '26년도에는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비율을 줄여 교부금 감액 패널티를 감소시키고자 학교에서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현물성 사업(교복)'은 '목적사업비 등'으로, 학생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사업(모바일포인트)'은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분하여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76〉 입학준비금 예산 편성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 가 통 계 목 명		산 출 내 역	금 액
계				51,042
초	포인트 지급	3100401 자체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00원×47,691명×100%	9,538
중 · 고	포인트 지급	6100302 자체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립)300,000원×1,187명× <u>30%^주</u> +(공립)300,000원×74,381명× <u>30%</u> +(사립)300,000원×62,781명× <u>30%</u>	12,451
		6200302		
	교복 지급	6100301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 6200301 목적사업비	(국립)300,000원×1,187명× <u>70%^주</u> +(공립)300,000원×74,381명× <u>70%</u> +(사립)300,000원×62,781명× <u>70%</u>	29,053

※ 주) '24년 결산 기준 중 · 고 입학준비금(교복, 포인트) 집행결과를 반영하여 편성

- '24년 결산액 412억 300만원중 모바일포인트 지급액 31.42%(130억 7,500만원), 교복 지급액 67.59%(281억 2,700만원)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11778 ('25. 8.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 관련 입학준비금 예산 집행 변경 추진 계획(안)"

- 편성 요청된 소요예산의 원가통계목을 확인하면 교육부 지침의 경우에도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 지급 사업은 ‘자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교복, 포인트 지급)중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실상의 현금성 수혜금인 ‘포인트’를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구별하여 관리하는 것은 타당한 사안으로 사료됨

□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17)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임금, 법정부담금 및 맞춤형복지비를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8,224억 9,000만원) 보다 2.2%, 184억 7,200만원 증액한 8,409억 6,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7〉 교육공무직원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840,962	742,817	822,490	18,472	2.2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823,428	725,385	806,484	16,944	2.1
맞춤형복지비	17,534	17,431	16,006	1,528	9.5

-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을 통합하여 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30개 직종 15,507명, 7,659억 7,100만원을 편성하고, 사립학교 8개 직종 1,323명, 574억 5,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교육공무직노조와 일반직공무원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①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사업비와 구분하여 편성하고 ②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는 교육청이

직접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지난 '21년도부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편성 구조를 직종(사업)별에서 인건비(기본급·수당)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예산이 통합편성되어 제출되고 있음

-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는 ①방학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확대, ②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변경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8,064억 8,400만원) 보다 2.1%, 169억 4,400만원 증가한 8,234억 2,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방학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확대 대상은 조리사, 조리실무사, 특수 교육실무사, 교육실무사(실습) 4개 직종이며 '24년 단체 협약에 따라 방학중 근무일을 보장하기 위해 '26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근무일수를 연간 3~5일 확대하고,
 - ②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6년도에 생활임금을 430원 인상하고, '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월급제 적용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처우개선수당 소요액이 증가하여 인건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교육공무직원 기본급과 수당은 '24년도 단체(임금)협약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현재 '25년도 교섭이 진행중에 있어 회계연도 개시이후 소요예산의 증액 조정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4년 단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5년 6월부터 교육실무사 직종통합과 상시전환을 추진한 바, '25년 7월 1일 방학중 비근무직종인 ①교육실무사(교무, 과학, 전산, 통합) 및 ②교무행정 지원사는 2,255명을 교육실무사로 직종통합 및 상시전환하고 ③유치원교육실무사는 82명 전환하여, 총 2,337명을 상시전환한 것으로 확인됨

- '26년도에는 '교육실무사' 및 '유치원교육실무사' 상시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이나, '25년 11월, 예산안을 제출할 시점까지 관련 규정에 '교육실무사' 직종의 신설과 정원 배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사업부서는 동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25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협의회' 심의를 통해 '교육실무사' 직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한 바,
 -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동 시행규칙 및 정원관리 규정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교육실무사' 직종에 대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제도적 요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는 교육공무직원 현원 증가, 호봉제 직원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인상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최종예산(160억 600만원) 보다 15억 2,800만원 증액한 175억 3,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3) 교육정책국

- **디벗스마트기기보급**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91)
- 창의미래교육과 소관 **디벗스마트기기보급**은 디지털기반 교육을 위해 학생·교원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722억 3,300만원) 보다 △75.8%, △1,305억 9,300만원을 감액한 416억 4,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78〉 디벗스마트기기보급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41,640	114,788	172,233	△130,593	△75.8
① 스마트기기보급	-	102,562	156,673	△156,673	△100.0
② 스마트기기보급지원	-	1,011	1,011	△1,011	△100.0
③ 스마트기기유지관리	13,856	7,102	7,877	5,979	75.9
④ 전자칠판설치	27,783	4,112	6,672	21,111	316.4

- ① 스마트기기보급과 ② 스마트기기보급지원은 학생과 교원에 스마트 기기와 충전함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도에는 '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이월하여 초3·6, 고1 학생에 디벗을 보급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금번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③ 스마트기기유지관리는 ⑨ 학생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시스템(MDM)(2억 2,500만원), ⑩ '22학년도에 보급된 디벗 유지관리용역(16억 2,300만원), ⑪ '27학년도 디벗 양품화(120억 800만원)에 소요되는 138억 5,6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동 사업은 금년도 최종예산(78억 7,700만원) 보다 75.9%, 59억 7,9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⑫ '22학년도에 보급된 디벗 유지관리 용역(16억 2,300만원)의 경우, '22학년도에 보급된 디벗 92,588대의 하자보수 기간(3년)이 '25년 6월에 종료되어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동 예산은 해당 디벗의 내용연수(6년)가 도래하는 '2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검토됨
- ⑬ '27학년도 디벗 양품화(120억 800만원)는 '24학년도 1학년(중, 고)에 배부한 기기를 출입시 회수 및 재정비하여 '27학년도 입학생에

게 재배부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1개 학년이 증가하여 금년도 최종예산(57억 9,300만원)보다 62억 1,5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는 것임

- ④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초5, 고2, 재개교학교의 일반(특수)학급 등 전자칠판 미설치 3,969학급(학급당 700만원)에 전자칠판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 277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26년도 본예산에는 '25년도 최종예산(66억 7,200만원) 보다 316.4%, 211억 1,100만원이 증액된 277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27년도까지 국·공·사립 초3~고3 일반(특수)학급에 전자칠판을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25년 9월 현재 보급 대상 29,549학급의 전자칠판 보급률은 71.5% 인 것으로 확인됨

〈표 2-79〉 연차별 「전자칠판」 설치 계획(2021~2027)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획	중1	중2·고1·특수	초3~고3 전체 (중1 제외)	중3·특수	초3·초4 ·고1·고2	초5·고2	초6·고3 ·각종
시행	중1	- (예산삭감)	중2	중3·특수(본) 초3·초4·고1 (추경1회)	중·특수 등	-	-

※ 연차별 추진 목표

- (학교급 확대) '21년 중1 → '23년 중2 → '24년 초3·4, 중3, 고1, 특수 → '26년 초5, 고2 → '27년 초6, 고3, 각종학교 순으로 보급
- (전면 시행) '27년까지 초3~고3의 10개 학년 설치 완료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17938 ('25.10.31), 재구성

- **디벗스마트기기보급** 사업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및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교원·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1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임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디벗' 확대 계획을 추진하여 '22학년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6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디벗을 보급 완료하여 10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2-80〉 연차별 「디벗」 보급 및 활용 계획(2022~2027)

구분	초				중			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22년					보급					
2023년					보급	활용				
2024년	디지털 선도학교(53교, 특수1 별도)				디지털 선도학교(34교)			디지털 선도학교(31교)		
					보급	활용	활용	보급		
2025년	보급	보급			활용	활용	활용	보급	활용	
2026년 ^{주)}	보급	활용	활용	보급	활용	활용	활용	보급	활용	활용
2027년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 학교급 확대 : '22년 중1 → '23년 중1 → '24년 중1, 고1, 초3~6^(디지털 선도학교) → '25년 초3·4, 고1 → '26년 초3·6, 고1 순으로 신규 보급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739 ('23. 5.), 재구성

※ 주) '26년도 초3·6, 고1은 '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25. 6.)으로 추진중

- 교육부에서는 「AI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25학년도부터 '27학년도 까지 초3~고1학년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5년 8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AIDT의 법적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한 바,
 - 학교에서는 기존에 교과서로 의무선정하였던 AIDT를 교육자료로 자율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보급한 스마트기기의 활용도가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 동 사업이 단순 기기 보급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투입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기기 내용연수(6년) 경과에 따른 교체비용, 유지보수·양품화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구조를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정투입효과 분석 및 중장기 예산확보방안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과 연동된 교육재정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공지능(AI)교육기반조성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06)

- 창의미래교육과 소관 **인공지능(AI)교육기반조성**은 AI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연수·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AI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4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1〉 인공지능(AI)교육기반조성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431	-	-	431	순증
A I 교 육 센 터	431	-	-	431	순증

- AI교육센터는 '26년 3월,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이전 후, 현청사 1~2층을 교육센터로 구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설계비 3억 100만원,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1억원 등 4억 3,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82〉 인공지능(AI)교육기반조성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431,429	
A I 교 육 센 터	431,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1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체험콘텐츠제작 및 구현 100,000천원×1식=100,000천원 ○ 보전금 29,97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공모보상비 29,975천원×1식=29,975천원 ○ 건설비 301,45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비 288,164천원×1식=288,164천원 - 설계의도구현비 13,290천원×1식=13,290천원

- 동 사업은 총 사업비가 88억 6,100만원으로 관련 규칙에 따라 지난 10월 자체투자심사를 이행한 결과 “적정”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 지난 10월, 관련 규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조건부채택”되어, 심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보완 제출하도록 통보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에서는 자체재정투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사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25년 11월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재정투자심사의 경우 차기 위원회 개최가 '26년 1월 예정되어 있고, 공공건축심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따라 “조건부채택”시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설계공모 또는 설

계용역 입찰공고 전까지” 보완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기일 까지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을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과용도서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11)

- 창의미래교육과 소관 **교과용도서지원**은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지원 및 인정도서 개발·보급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056억 1,900만원) 보다 31.4%, 331억 3,300만원 증액한 1,387억 5,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3〉 교과용도서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 감률 (C / B)
		본 예산	최종예산(B)		
계	138,752	116,394	105,619	33,133	31.4
① AI디지털교과서	-	25,629	14,884	△14,884	△100.0
② 각급학교용도서	137,765	-	-	137,765	순증
③ 초·중학교교과용도서	-	89,777	89,777	△89,777	△100.0
④ 고등학교특수교육 대상자교과서	-	3	3	△3	△100.0
인정도서관리	27	185	155	△127	△82.1
초·중학교교과용도서 재고위탁관리	550	483	483	67	13.9
⑤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교과서	408	315	315	93	29.5

※ ②각급학교 교과용 도서는 ③초·중학교 교과용 도서와 ④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사업을 통합하는 것으로 ③, ④ 사업은 폐지

- ①AI디지털교과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AIDT의 법적지위가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되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25년 9월, 법 개정으로 인해 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2학기에도 교육자료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이용을 승인받은 바,
 - '25학년도 AIDT(교과서) 선정 학교 중 연간 단위 계약을 이미 체결한 학교에 계약금액중 2학기 사용분(총 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교부하기 위해 예산의 이용을 통해 융통한 것이나, '26년도 세출예산에는 AIDT 교육자료 구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②각급학교 교과용 도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 학교의 학생 및 교사에게 교과용도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③초·중학교 교과용 도서와 ④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사업을 통합하고,
 - 「2022 개정교육과정(초5·6, 중2, 고2 대상)」에 따른 교과용도서 단가 상승,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계약·공급 업무 이관 등으로 1,377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⑤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과서는 초·중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5교)의 학생 및 교사에게 교과용도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나, 「2022 개정교육과정(초5·6, 중2 대상)」에 따른 교과용도서 단가 인상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억 1,500만원) 보다 29.5%, 9,300만원 증액된 4억 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누리과정지원

-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94)
- **유아보육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97)
- **유아학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701)
- **유아학비부대경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705)
- **저소득층유아학비추가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708)

-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은 만3~5세의 취학 이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4,893억 1,600만원) 보다 10.0%, 491억 1,500만원을 증액한 5,384억 3,2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4〉 누리과정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538,432	489,316	489,316	49,115	10.0
①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	4,039	3,081	3,081	958	31.1
② 유아보육료	249,676	243,986	243,986	5,689	2.3
③ 유아학비	282,439	239,988	239,988	42,451	17.7
④ 유아학비부대경비	306	350	350	△44	△12.7
⑤ 저소득층유아학비 추가지원	1,969	1,909	1,909	60	3.2

- ②유아보육료, ③유아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5세 유아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①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4,702억 1,500만원)과 ⑤일반재원(619억원)을 추가하여 5,321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⑦특별회계전입금(4,702억 1,500만원)은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에 따른 지원액(4,044억 9,300만원) 외에도 「만4세」와 「만5세」 무상교육비(보육료)(657억 2,100만원)를 포함한 것으로
 - 무상교육비(보육료)는 “5세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 추진을 위해 지난 '25년 7월부터 만5세 유아에게 1인당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추가 지원한 것으로, '26년도에는 만4세 유아 지원금까지 포함하여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⑧일반재원(619억원)은 누리과정비 외에 자체재원으로 「만3~5세」 유아 학비·보육료를 「추가 지원」(1인당 5만원)하기 위해 편성 요청한 것으로 지난 '24년도에 만5세 지원을 시작으로 '25년에는 만4세, '26년에는 만3세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임
- 사업내역중 ①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은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외국 국적 유아에게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최종예산(30억 8,100만원) 보다 31.1% 증액한 40억 3,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은 차별 없는 유아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22년도부터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26년도에는 금년도에 반영하지 않았던 만3~5세 유아학비 「추가 지원」(1인당 5만원) 5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25년 9월,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누리과정지원의 근거 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한시법이었으나, '25년 8월, 유효기간을 '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요인은 순연된 것으로 사료됨

〈표 2-85〉 유아보육료중 3~5세 보육료 사업내역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산출기초	금액	
3 세 보 육 료	91,297			91,666
방과후과정비	17,605	70,000원×18,496명×12월	15,536	
보 육 료	70,422	280,000원×18,496명×12월	62,146	
처우개선비등	3,269	13,000원×18,496명×12월	2,885	
보육료(유보통합) ^{주1)}	-	50,000원×18,496명×12월	11,097	
4 세 보 육 료	77,501			83,045
방과후과정비	13,135	70,000원×14,328명×12월	12,035	
보 육 료	52,543	280,000원×14,328명×12월	48,142	
보육료(유보통합)	9,382	50,000원×14,328명×12월	8,596	
처우개선비등	2,439	13,000원×14,328명×12월	2,235	
보육료(무상보육) ^{주2)}	-	70,000원×14,328명×12월	12,035	
5 세 보 육 료	75,187			74,965
방과후과정비	12,743	70,000원×12,934명×12월	10,864	
보 육 료	50,974	280,000원×12,934명×12월	43,458	
보육료(유보통합)	9,102	50,000원×12,934명×12월	7,760	
처우개선비등	2,366	13,000원×12,934명×12월	2,017	
보육료(무상보육) ^{주3)}	-	70,000원×12,934명×12월	10,864	

※ 주1) 일반재원으로 누리과정비 외에 '만3세' 추가 지원(1인당 5만원)

: '24년 만5세 →'25년 만4세 → '26년 만3세 확대

※ 주2~3) '만4~5세' 무상보육료 추가 지원(1인당 7만원)

〈표 2-86〉 유아학비중 3~5세 유아학비 사업내역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2025년도 최종예산	2026년도 예산안		
		산출기초	금액	
3 세 유아학비	62,248			69,667
방과후과정비(공립)	1,790	50,000원×3,373명×12월		2,023
방과후과정비(사립)	10,359	70,000원×12,115명×12월		10,176
유아학비(공립)	4,106	100,000원×3,619명×12월		4,342
유아학비(사립)	45,991	280,000원×12,867명×12월		43,233
유아학비(공립-유보통합) ^{주1)}	-	50,000원×3,619명×12월		2,171
유아학비(사립-유보통합) ^{주2)}	-	50,000원×12,867명×12월		7,720
4 세 유아학비	86,205			106,769
방과후과정비(공립)	2,361	50,000원×4,380명×12월		2,628
방과후과정비(사립)	12,379	70,000원×14,779명×12월		12,414
유아학비(공립)	5,212	100,000원×4,636명×12월		5,563
유아학비(사립)	54,001	280,000원×15,593명×12월		52,392
유아학비(공립-유보통합)	2,606	50,000원×4,636명×12월		2,781
유아학비(사립-유보통합)	9,643	50,000원×15,593명×12월		9,355
유아학비(공립-무상교육) ^{주3)}	-	20,000원×4,380명×12월		1,051
유아학비(사립-무상교육) ^{주4)}	-	110,000원×15,593명×12월		20,582
5 세 유아학비	91,533			106,002
방과후과정비(공립)	3,055	50,000원×5,287명×12월		3,172
방과후과정비(사립)	12,530	70,000원×14,044명×12월		11,796
유아학비(공립)	6,826	100,000원×5,605명×12월		6,726
유아학비(사립)	55,752	280,000원×15,090명×12월		50,702
유아학비(공립-유보통합)	3,413	50,000원×5,605명×12월		3,363
유아학비(사립-유보통합)	9,955	50,000원×15,090명×12월		9,054
유아학비(공립-무상교육) ^{주5)}	-	20,000원×5,287명×12월		1,268
유아학비(사립-무상교육) ^{주6)}	-	110,000원×15,090명×12월		19,918

※ 주1~2) 일반재원으로 누리과정비 외에 '만3세' 추가 지원(1인당 5만원)

: '24년 만5세 → '25년 만4세 → '26년 만3세 확대

※ 주3~6) '만4~5세' 무상교육비 추가 지원(공립 1인당 2만원, 사립 1인당 11만원)

□ 늘봄학교운영

- **늘봄학교운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28)
 - **늘봄학교지역연계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35)
 - **초등돌봄교실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41)
 - **초등방과후학교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844)
- 초등교육과 소관 **늘봄학교운영**은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724억 5,700만원) 보다 61.7%, 446억 8,600만원 증액된 1,171억 4,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7〉 늘봄학교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117,144	78,912	72,457	44,686	61.7
① 늘봄학교운영지원	59,816	21,671	15,217	44,598	293.1
② 늘봄학교지역연계운영	4,964	2,309	2,309	2,655	115.0
③ 초등돌봄교실운영	48,962	49,837	49,837	△875	△1.8
④ 초등방과후학교운영	3,402	5,094	5,094	△1,692	△33.2

- ① 늘봄학교운영지원은 598억 1,600만원으로 전액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바,
 ② 늘봄전담체제 구축 지원(6,300만원), ④ 늘봄지원센터 운영(1억 2,400만원),
 ③ 늘봄학교담당자역량강화(6,100만원), ⑤ 늘봄학교자원봉사자(4억 2,400만원),

ⓐ 늘봄학교프로그램 운영비(570억 4,600만원), ⓑ 늘봄학교 환경개선구축비(20억 2,000만원) 등 학교현장에서 늘봄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8〉 늘봄학교운영지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59,816	
늘봄전담체제구축지원	63	운영비(강사수당, 사무용품, 임차료 등) 52,960천원 업무추진비 10,800천원
늘봄지원센터운영	124	운영비(연수용역비, 사무용품, 수당 등) 117,500천원 업무추진비 7,200천원
늘봄학교담당자역량강화	61	운영비(강사수당, 자료인쇄비, 수당 등) 58,760천원 업무추진비 3,200천원
늘봄학교자원봉사자	424	자원봉사활동비 422,400천원 (14,000원×100교×24명 + 30,000원×12교×240일) 업무추진비 2,000천원
늘봄학교프로그램운영비	57,046	기본운영비 42,853,524천원, 안전관리비 4,821,600천원, 위탁지원금 7,500,168천원, 운영여건개선 1,650,000천원 등
늘봄학교환경개선구축비	2,020	늘봄교실환경개선 1,500,000천원 (30,000,000원×50실) 돌봄교실구축 520,000천원
임기제교육연구사선발연수	74	운영비(수당, 사무용품, 급량비 등) 71,860천원 업무추진비 3,100천원

- 사업내용중 ⓑ 늘봄학교프로그램 운영비(570억 4,600만원)는 금년도 최종 예산(216억 5,800만원) 보다 163.4%, 353억 8,800만원 증액한 570 억 4,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금년도에는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216억 5,800만원) 뿐만 아니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사업(385억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한 것이나,

- '26년도에는 늘봄교실 ⑦기본운영비(428억 5,300만원), ⑨안전관리비(48억 2,100만원), ⑩위탁운영지원금(75억원), ⑪운영여건개선비(16억 5,000만원), ⑫학급운영비(2억 2,100만원)를 포함하여 총 570억 4,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②늘봄학교지역연계운영은 전액 일반재원(49억 6,400만원)으로 ③늘봄학교기관연계(9억 5,500만원), ④늘봄학교대학연계(16억 9,800만원), ⑤지역거점형늘봄센터운영(5억 2,200만원), ⑥지역연계돌봄운영지원(1억원), ⑦학교돌봄터운영협력(14억 8,700만원) 등을 편성 요청한 것임
- ③초등돌봄교실운영은 돌봄교실의 ⑧운영비, ⑨간식비, ⑩저소득층 방학중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오후돌봄교실 및 연계형(틈새) 돌봄 운영비를 감액하여 금년도 최종예산(498억 3,700만원) 보다 △1.8%, △8억 7,500만원 감액한 489억 6,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간식비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그 지원 근거가 필요할 것인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25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급간식 등 직접적인 물품을 제공'하려는 경우 조례상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제·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25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늘봄학교 운영 중 참여 학생에게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늘봄학교운영**은 간식비 외에도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자에게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그 지원 근거가 필요하나, '25년 11월 현재까지 늘봄학교운영과 관련한 법령 또는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교육부에서는 지난 '23년 1월,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과 '25년 1월, 「2025 늘봄학교 시행방안」을 통해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시도교육청도 관련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음에도 '25년 11월 현재까지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됨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년 3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급·간식비 지원을 포함하여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늘봄학교 운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한 관련 법령의 불비 등을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늘봄학교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간식비 외에도 늘봄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혁신기획운영**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050)

- 학생역량·혁신교육과 소관 **학교혁신기획운영**은 교육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자치 및 교육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2억 6,700만원), 학교자치활성화지원(12억 8,500만원), 학교 혁신일반화지원(4억 8,700만원), 학교혁신지원센터운영(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89〉 학교혁신기획운영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 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2,047	727	4,241	△2,193	△51.7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	38	38	△38	△100.0
학교안교원학습공동체 운영지원	267	195	195	71	36.8
① 학교자치활성화지원	1,285	-	3,480	△2,194	△63.1
학교혁신일반화지원	487	488	521	△34	△6.5
학교혁신지원센터운영	6	5	5	1	12.4

- ①학교자치활성화지원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자치기구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학교자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년도 최종예산(34억 8,000만원) 보다 △21억 9,400만원이 감액된 12억 8,5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11개 교육지원청에 ⑦교육자치기반학교지원비(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운영) 11억원, ⑧학교자치사례공유(660만원), ⑨학교자치역량강화(2,900만원), 국립 10개교 및 사립 65교에 ⑩사업운영비 1억 5,000만원(교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확인됨

〈표 2-90〉 학교자치활성화지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역	소 요 예 산	편 성 내 역
학 교 자 치 활 성 화 지 원	1,2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1,083,2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육자치기반학교지원 1,049,280천원 (지원청별 학교지원 특색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수당: 142,320천원 - 기타일반수용비: 9,450천원 - 용역비: 425,400천원 - 운영수당: 208,260천원 - 임차료: 57,000천원 - 행사용품비: 206,850천원 나. 학교자치사례공유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3,000천원 - 행사용품비: 2,000천원 다. 학교자치역량강화 29,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수당: 2,000천원 - 연수운영비: 24,000천원 - 운영수당: 3,000천원 ○ 업무추진비: 52,3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교육자치기반학교지원: 50,720천원 나. 학교자치사례공유: 1,600천원 ○ 전출금등: 2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립) 2,000천원×10교 ○ 학교회계전출금: 13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립) 2,000천원×65교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053~1054, 재구성

- ⑦교육자치기반학교지원비(교육지원청 특색사업 운영비)는 11개 지원 청에 11억원을 편성 요청하는 것으로, 지원청별 요청 사업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나,
- 지역 특성(다문화, 학생배치, 복합위기 학생 등)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별 학교지원 특색사업을 자율운영하도록 사업설명서에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지원청에서 이미 빨굴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연계·통합 추진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교육지원청별 학교지원 특색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자칫 기존 사업 규모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지원되는 예산의 성격은 강사비, 운영수당, 행사용품비 등 공통 운영경비로 검토되나, '교육자치에 기반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 발전 및 학교지원 자율사업 추진'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추진 사업의 차별성이 구체화되도록 운영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또한 국·사립학교에 지원되는 ⑧사업 운영비(1억 5,000만원)는 교육공동체 소통 시스템(학교자치협의회) 운영, 학교 구성원간 소통·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수, 컨설팅 등의 경비로 교당 200만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년도에도 국·공·사립 1,343교에 교당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6년도에는 공립학교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사립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중 통합교부운영비로 편성하고, 동 사업으로는 국립학교 10교 및 사립 학교 65교(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093)

- 학생역량·혁신교육과 소관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은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교원역량강화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 최종예산(47억 9,600만원) 보다 2.8%, 1억 3,400만원 증액한 49억 3,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91〉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4,931	3,696	4,796	134	2.8
교수학습자료 및 홍보제작	33	33	33	-	0.0
기본학력교원연수	-	6	6	△6	△100.0
기본학력지도 콘텐츠개발	-	29	29	△29	△100.0
기초학력지원단 운영	32	5	5	26	513.3
기초학력지도컨설팅 운영	-	24	24	△24	△100.0
① 단위학교기초학력 책임지도제	4,666	3,560	4,660	6	0.1
②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	200	-	-	200	순증
전환기기본학력보장 프로그램	-	38	38	△38	△100.0

- ① 단위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제는 국·공·사립 중·고(각종 포함)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최종예산(46억 6,000만원) 보다 0.1%, 600만원 증액된 46억 6,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중학교는 교당 200만원을 증액한 700만원, 고등학교는 교당 1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됨

- ②서울특별시교육청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관련 법령에는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대학,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에서는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법인이나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2-92〉 서울특별시교육청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200,000	
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	200,000	◦ 운영비 200,000천원 - 위탁사업비 200,000천원×1식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095~1096

- 그러나 제출된 예산안에는 동 사업예산 2억원이 운영비(일반용역비)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으로써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조사 연구 등이 아닌 것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관련 법령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업무는 기초학력보장제도 개선·연구,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지원 및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등 임을 고려한다면 동 사업 예산을 운영비(일반용

역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관련 지침에서도 용역은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民間이 수행하는 경우, 주로 단순 지원 사무를 대상으로民間부문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 제도 정책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하려는 동 사업 전체를 용역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 사료됨
-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에 대해 교육감은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사업 전체를 용역계약에 따라 운영하기 보다는 위탁 운영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평생진로교육국

□ 공공도서관환경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116)

○ 평생교육과 소관 **공공도서관환경개선**은 노후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을 증·개축 및 리모델링 하기 위해 금년도(14억 9,400만원) 보다 △91.8%, △13억 7,200만원 감액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93〉 공공도서관환경개선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A)	2025년도 최종예산 (B)	증 감 (C=A-B)	증 감률 (C / B)
계	122	1,494	△1,372	△91.8
개 포 도 서 관 건 립	-	1,494	△1,494	순감
공 간 개 선 사 업	52	-	52	순증
노 원 평 생 학 습 관 증 축 리 모 델 링	70	-	70	순증

- 사업내역중 노원평생학습관 증축리모델링은 준공 후 36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노원평생학습관을 증축·리모델링 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공사로 총 소요예산(180억 200만원)중 '26년도 예산안에는 설계공모보상비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재정투자 사업으로서, 예산편성 전 ①공공건축 사전검토, ②공공건축 심의위원회, ③자체 투자심사, ④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바,
- 소관부서는 ①관련 조례를 근거로 공공건축 사전검토 완료 후, ②지난 '24년 12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로 채택되어 해당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③지난 '25년 7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통과되어 '25년 제4회 재정투자심사시 서면으로 조건부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④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소관부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고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5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12월 1일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확인되기에, 동 사업예산은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원장등관계자연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157)

- 평생교육과 소관 **학원장등관계자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 및 교습소 교습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1억 1,800만원)과 동일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2-94〉 학원장등관계자연수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A)	2025년도 최종 예산 (B)	증 감 (C=A-B)	증 감률 (C / B)
계	118	118	-	-
학원장등관계자연수	118	118	-	-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동 사업을 단순히 민간이전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간위탁금을 편성한 것으로 산출기초에 민간위탁금의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민간이전만 기재하고 있어 편성 요청된 예산의 사전절차 등을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95〉 학원장등관계자연수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118,621	
학원장등관계자연수 (교습소 단체 위탁)	40,000	○ 민간이전 5,000원×8,000개소×1회
학원장등관계자연수 (학원 단체 위탁)	78,621	○ 민간이전 (7,500원×10,000개원×1회)+(7,242원×500명×1회)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159

- 아울러 민간위탁의 경우, 관련 조례를 근거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지난 '20년 12월,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된 후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5년 10월, 「학

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12월 1일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확인되기에 동 사업예산은 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안전망구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222)

-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학교안전망구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교육 및 정신건강 고위기학생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12억 5,700만원) 보다 35.4%, 4억 4,500만원을 증액한 17억 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96〉 학교안전망구축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 감률 (C/B)
		본 예산	최종예산(B)		
계	1,703	225	1,257	445	35.4
배움터지킴이운영	112	112	112	-	-
사회정서교육활성화지원	757	-	757	-	△0.1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연수	-	109	334	△334	순감
생명존중교육	50	-	50	-	-
생명존중위원회운영	3	3	3	-	-
정신건강고위기학생지원	780	-	-	780	순증

- 사업내역중 **생명존중교육**은 초·중·고 30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생명존중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5,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는 법정 문서로, 사업별설명서를 통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생명존중교육지원」을 위한 운영비(5,000만원)가 산출기초 없이 「1식」으로만 작성되어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없음
- 따라서 편성요청된 사업내용이 강사수당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반용역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과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편성사례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표 2-97〉 생명존중교육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내용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50,000	
생명존중교육지원	50,000	○ 운영비 50,000,000원×1식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224

- 소관부서는 향후 의회가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내용중 정신건강고위기학생지원은 기존의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연수를 폐지하고, '26년도에 정신건강고위기학생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소요 예산 7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 관련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해 ①(기존사업)위기지원단 및 ②(신규사업)응급구조단을 운영하고, ③(신규사업)입원학생에 대한 학습 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바우처 포함) 신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행한 사업들은 현금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사업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 현금성 수혜금 이외에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재활·돌봄·정보의 제공·관련 시설의 이용 등'과 같은 비현금성 사회서비스 사업(바우처 포함) 또한 협의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에 따른 협의 제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경우, '26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청소년 마음건강 심층상담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지난 '25년 7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개념을 협소하게 인식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제한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금성 수혜금 이외에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현금성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사전절차가 미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절차를 미이행한 경우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여 절차적 흠결이 있는 동 소요예산은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이후 편성요청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무상급식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418)

-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무상급식**은 공·사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식품관리비와 인건비 소요액 중 **교육청 재원** 분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4,321억 7,500만원) 보다 3.8%, 164억 2,200만원 증액한 4,485억 9,8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98〉 무상급식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증 감 (C = A - B)	증 감률 (C / B)
계	448,598	432,175	16,422	3.8
(아 학 생) 아 침 이 있 는 학 교 생 활	177	14	163	1,170.2
① (유치원) 식품관리비	23,499	22,975	523	2.2
① (유치원) 인건비	17,353	16,815	537	3.1
② 식 품 관 리 비	322,635	310,479	12,155	3.9
② 인 건 비	84,265	81,246	3,019	3.7
조 리 종 사 원 대 체 인 력 인 건 비	668	645	22	3.5

-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함께 '26년도 식품비·관리비·인건비의 단가 인상과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간(5:3:2) 재원 분담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6년도 예산안에 식품관리비와 인건비를 ①유치원급식과 ②학교급식으로 구분하여 교육청 재원 분담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① **유치원 급식**의 경우, '26년도 유치원 원아 58,594명에 대한 급식예산 총소요액은 816억 8,400만원으로 교육청 408억 5,200만원, 서울시 244억 9,900만원, 자치구 163억 3,300만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 교육청 부담분 408억 5,200만원은 **(유치원)식품관리비** 234억 9,900만원과 **(유치원)인건비** 173억 5,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2-99〉 ‘유치원급식’ 재원부담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
계	81,684	40,852	24,499	16,333
공립 유치원	11,536	5,771	3,459	2,306
사립 유치원	70,147	35,080	21,040	14,027

※ 자료근거: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13850('25. 9.18), “2026년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예산편성 계획(안)”

- ②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이하 학교급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25년도 (3,917억 2,500만원) 보다 3.8%, 151억 7,400만원 증액된 4,06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표 2-100〉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무상급식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최종예산(B)	증 감 (C = A - B)	증 감률 (C / B)
계	406,900	391,725	15,174	3.8
식 품 관 리 비	322,635	310,479	12,155	3.9
인 건 비	84,265	81,246	3,019	3.7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418

- ②학교 급식의 경우, '26년도 재학생(73만 9,312명)을 대상으로 7,832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금년도(7,596억 100만원) 보다 3.1%, 236억 3,8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②학교 급식은 재원 분담 비율(5:3:2)에 따라 교육청(3,837억 2,400만원), 서울시(2,256억 4,800만원), 자치구(1,523억 4,300만원)가 각각 분담하고, 공립위탁조리교 조리종사원 인건비(215억 2,200만원)는 서울시교육청이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 서울시교육청은 Non-GMO 식품비 추가부담과 학기중 비급식일에 대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까지 추가로 부담(16억 5,300만원)함에 따라 식품 관리비 3,226억 3,500만원과 인건비 842억 6,500만원이 포함된 4,069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2-101〉 '25년~'26년 '학교급식' 재원부담 소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6 년 (A)	2 0 2 5 년 (B)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총 소 요 액	784,892	759,601	25,291	3.3
분 담 액 (100%)	①교육청(50%)	383,724	370,178	15,199
	②서울시(30%)	225,648	222,107	3,541
	③자치구(20%)	152,343	148,071	4,272
④교육청 별도부담 인건비 ^{주1)}	21,522	19,244	2,278	11.8
⑤교육청 추가 부담액 ^{주2)}	1,653	-	1,653	순증
교육청부담 계(①+④+⑤)	406,900	389,422	17,478	4.4
실 제 분 담 률	교육청 52% 서울시 29% 자치구 19%	교육청 51% 서울시 29% 자치구 20%	교육청 4.4% 서울시 1.5% 자치구 2.8%	

※ 주1) 공립위탁조리교 조리종사원인건비 : 45,310천원×475명=21,522,250천원

※ 주2) Non-GMO 식품비 30% 추가부담 및 학기중 비급식일 저소득층 자녀 지원 : 1,653,220천원

5) 교육행정국

□ 교육공간총괄기획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53)

- 학교지원과 소관 **교육공간총괄기획**은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학교 통폐합 및 이전·재배치에 따른 이전적지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32억 200만 원) 보다 129.8%, 41억 5,800만원 증가한 73억 6,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교육공간총괄기획**을 위해 1억 7,30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고, 공진중 폐교 부지에 대한 에코스쿨조성에 71억 8,600만원을 건설비 등으로 편성한 것임

〈표 2-102〉 교육공간총괄기획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B)
		본 예산	최종예산(B)		
계	7,360	273	3,202	4,158	129.8
교육공간총괄기획	173	273	173	-	-
에코스쿨조성	7,186	-	3,028	4,158	137.3

-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25년 2월, '25년도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한 바,

- 평가결과 동 사업은 135개 재정사업중 134위에 해당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함에도 사업예산을 매년 과다 편성하고, 성과목표치 설정 및 사업평가·환류가 미흡하여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 등급중

“미흡”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됨

- 평가결과에 따라 “미흡”사업은 ’26년도 예산 편성시 10%이상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관부서는 교육공간총괄기획 사업이 5~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며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매년 상이하기에 일괄적인 예산삭감이 부적절함을 사유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소요경비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동 사업은 ’25년도 평가 뿐만 아니라 ’24년도 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미흡”사업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3년 연속 “미흡”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에
- 소요예산이 승인될 경우, 소관부서는 ’26년도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최소한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의 집행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이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집행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였음을 감안하여, 편성 요청된 예산규모가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적정규모학교육성

-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72)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75)
 - **적정규모육성학교교육환경개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590)
- 학교지원과 소관 **적정규모학교육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통폐합 및 이전·재 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고, 적정규모 추진대상 학교의 학생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억 1,2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03〉 적정규모학교육성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5,212	3,857	4,534	678	14.9
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4,395	3,368	4,192	203	4.8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	114	54	54	60	109.8
② 적정규모육성학교교육환경개선(주 1)	702	433	287	415	144.3

주1) 「적정규모육성학교교육환경개선(세세부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세부사업)」에 포함되나, 검토보고서는 「적정규모학교육성(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작성함

- 사업내역중 ①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금은 통합학교 및 폐지학교, 통합운영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교육복지 지원하는 것으로 43억 9,5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는 법정 문서로, 사업별설명서를 통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내용에는 '프로그램 운영', '학생교육복지 지원'으로 작성되어 있고, 소요예산에는 산출기초도 없이 각 항목을 '1식'으로만 기재하여 세부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산출근거가 없음
- 따라서 편성요청된 예산이 무엇을 근거로 편성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과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는 편성사례인 것으로 판단되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의 승인여부는 보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관부서는 향후 의회가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설명자료의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04〉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용	2025년도 최종 예산	2026년도 예산안				
		금 액	산	출	기	
계	4,192	4,395	-			
통폐합학교지원	4,021	3,562	○ 학교회계전출금 - (공립)통합학교 933,501,000원×1식 - (사립)통합학교 2,170,000,000원×1식 - 폐지학교 459,283,000원×1교			
통합운영학교지원	170	832	○ 학교회계전출금 - (사립)통합운영학교 832,849,000원×1식			

- 아울러 사업내역중 ②적정규모육성학교 교육환경개선은 통합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에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7억 2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표 2-105〉 적정규모육성학교 교육환경개선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 감률 (C/B)
		본 예산	최종예산(B)		
계	702	433	287	415	144.3
공립초	556	200	200	356	178.0
공립중	27	-	-	27	순증
사립중	19	-	-	19	순증
공립고	-	83	83	△83	순감
공사립초중고	100	150	3	96	2,616.6

- 동 사업은 성수초 외 3교에 대하여 실외놀이시설 개선 공사 등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대상학교별 공사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사업항목중 ‘공사립초중고’의 경우, 적정규모육성 학교의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현안사업 지원’ 1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도(300만원)보다 2,616.6%, 9,600만원 증액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 자료」에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에도 ‘긴급현안사업 지원’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며 산출기초 없이 ‘1식’으로만 제출하여 대상학교 수는 물론 학교별 평균 지원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제출한 것으로

**〈표 2-106〉 적정규모육성학교 교육환경개선중
‘공사립초중고’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용	2025년도 최종 예산	2026년도 예 산 안			
		금 액	산 출	기	초
공 사 립 초 중 고	3	100	○ 학교회계전출금 - 긴급현안사업 지원	100,000,000원	×1식

- 동 소요예산이 적정규모육성 학교의 긴급 현안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 이기에 학교 수 및 지원액을 예산편성 시점에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 관련 법령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까지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긴급지원을 이유로 사실상의 포괄비를 편성한 사례로 개별 세부사업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교육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 동 사업내용중 편성 요청한 '긴급현안사업 지원' 1억원은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일시차입금상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03)

- 교육재정과 소관 **일시차입금상환**은 금년도(5억 7,500만원) 대비 △25.0%, △1억 4,400만원 감액한 4억 3,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2-107〉 일시차입금상환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 0 2 5 년 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431	575	575	△144	△25.0
일 시 차 입 금 이 자 비 용	431	575	575	△144	△25.0

- 관련 법령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은 '26년도 「예산총칙」으로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1조 942억 2,000만원으로 의결을 요청하고, 동 사업에는 일시차입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4억 3,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은 일시차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편성한 일시차입금 상환비용을 불용처리하였고, '25년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6년도의 경우, 40일간 약 1,600억원 규모의 일시적인 자금차입이 발생되는 가정하에 '26년도 예산(안)중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미리 편성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66)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은 금년도 최종예산(138억 4,700만원) 대비 55.4%, 76억 8,200만원 증액된 215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26년도에 18개교에 대한 설계공모 보상비(1,200만원), 설계비(4억 6,600만원), 시설비(210억 5,100만원)를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08〉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 0 2 5 년 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21,530	2,728	13,847	7,682	55.4
급 식 실 및 학 생 식 당 신 증 축	21,530	2,728	13,847	7,682	55.4

- 동 사업은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재정투자 사업이며, 예산편성 전 ①공공건축 사전검토, ②공공건축 심의위원회, ③자체 투자심사, ④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바,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학교별 사업규모와 시기에 따라 해당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 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안평초 외 2교의 경우, 해당 학교 급식시설 신·증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25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어 12월 1일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으로 확인되기에 동 학교에 대한 사업예산은 교육위원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관련 지침은 건설비를 설계비와 시설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설계비와 시설비를 구분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안평초의 경우, '26년도 예산(안)에 설계비인 6,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예산의 표기가 단순 오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에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2-109〉 안평초 급식실 및 학색식당 신증축 편성현황

(단위 : 천원)

사업내역	목	예산	
		산출기초	금액
1. 급식실 및 학색식당 신증축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1) 안평초			1,343,808
가) 시설비	420 건설비	69,600,000원×1식=	69,600
나) 시설비	420 건설비	1,274,208,000원×1식=	1,274,208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p.642

〈표 2-110〉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대상학교

(단위 : 백만원)

연 번	설립	학 교 명	예 산 편 성 내 역				향후 추진일정		
			설계공 모 보상비	건 설 비		계	설계	착공	준공
				설 계 비	시 설 비				
1	공립	안평초	-	69	1,274	1,343	'26. 3	'25. 4	'26.12
2	공립	수색초	-	-	2,000	2,000	'25.11	'26. 3	'27. 2
3	공립	서연중	-	-	1,500	1,500	'24.12	'25. 1	'28. 1
4	공립	수락초	-	-	1,000	1,000	'25. 6	'26. 2	'26.10
5	공립	한천중	-	-	1,500	1,500	'25. 9	'25.12	'26.12
6	공립	방화초	-	-	2,000	2,000	'24.12	'25.11	'26.11
7	공립	목동중	-	-	30	30	'25.11	'26.12	'27.12
8	공립	목일중	-	-	1,306	1,306	'24. 9	'25. 9	'26. 6
9	공립	신서중	-	-	2,000	2,000	'25.10	'26. 1	'27.12
10	공립	대모초	-	274	1,000	1,274	'26. 4	'26. 9	'27.12
11	공립	반원초	-	-	3,000	3,000	'25. 7	'25.11	'26.11
12	공립	방배중	-	-	194	194	'24. 9	'24.12	'26. 2
13	사립	선덕중	12	122	-	135	'26. 9	'26.10	'27. 7
14	사립	대진디자인고	-	-	674	674	'26. 1	'26. 4	'27.1
15	사립	서울동산고	-	-	500	500	'24. 2	'26. 3	'26. 9
16	사립	양천고	-	-	1,358	1,358	'23.12	'25. 3	'26. 9
17	사립	용화여고	-	-	1,200	1,200	'25. 6	'26. 1	'26. 8
18	사립	중앙여고	-	-	513	513	'24.11	'25.11	'27. 2
계[18교] (초 6교, 중 7교, 고5교)			12	466	21,051	21,530	-	-	-

□ **기타증축**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75)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기타증축**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서울반도체고의 기숙사 증축비로, 금년도(69억 4,900만원) 보다 △76.7%, △53억 3,300만원 감액된 16억 1,6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11〉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 0 2 5 년 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1,616	-	6,949	△5,333	△76.7
기 타 증 축	1,616	-	6,949	△5,333	△76.7

- 서울반도체고는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위해 기숙사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기숙사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26년도 예산(안)에 설계공모 보상비 5,600만원, 설계비 5억 6,000만원, 시설비 10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예산은 「2026~2030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재정 투자사업으로, 예산편성 전 ①공공건축 사전기획, ②공공건축 심의위원회, ③자체 투자심사, ④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바,
- 소관부서는 ①관련 조례를 근거로 공공건축 사전기획·적정성 검토 완료 후, ②지난 '25년 8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로 채택되어 해당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 ③ '25년 9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통과된 것이 확인되나, 이후 '외부재원 투자 유치 노력'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사업부서는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④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 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소관부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고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5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 12월 1일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확인되기에, 동 사업예산은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연동하여 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은 당초 '26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공사가 지연되어 준공예정일이 '28년 2월로 변경된 것은 물론 교육부로부터 개교를 늦출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1차년도 공사비에 해당하는 설계비 및 시설비를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린스마트스쿨(국고보조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1694)

-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그린스마트스쿨(국고보조금)**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26년도에는 3개교에 대한 시설비 재원중 국고보조금 13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금년도 최종예산(166억 1,800만원) 보다 △21.7%, △36억 1,8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임
- '26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면중초 외 2교는 ①학부모 동의 및 사전기획, ②공공건축 심의, ③재정투자심사 ④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됨

〈표 2-112〉 그린스마트스쿨(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 0 2 5 년 도		증 감 (C=A-B)	증 감 률 (C / B)
		본 예 산	최종예산(B)		
계	13,000	-	16,618	△3,618	△21.7
공립초	13,000	-	15,847	△2,847	△17.9
공립각종	-	-	771	△771	순감

- **그린스마트스쿨(국고보조금)**은 완료까지 수 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연부율에 따라 실제 집행여건과 무관하게 사업비가 매년 분할 교부되어 자금유보에 따른 이월 및 불용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검토 되는 바,
- 국회 교육위원회는 '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동 사업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흡한 집행실적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지적한 바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집행율은 전국 시도교육청중 최하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부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사업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연부율 조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동 사업은 국고(30%)와 지방비(70%)를 매칭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6년도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130억원)만 편성하고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은 바,
 - 관련 법령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도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지출 및 지출규모가 의무화된 경비로서 최우선으로 재원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서울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26년도 본예산(안)에 시·도교육청 분담액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70% 이상) 매칭 비율을 준수하여 보조금이 부족교부나 지연교부 되지 않도록 자체재원을 대응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직속기관

□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16)

- 보건안전진흥원 소관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를 대상으로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95억 1,400만원) 보다 △89.4%, △85억 1,400만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13〉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B)
		본 예산	최종예산(B)		
계	1,000	1,207	9,514	△8,514	△89.4
공립	700	400	400	300	75.0
공립고	-	-	1,001	△1,001	순감
공립중	-	70	1,637	△1,637	순감
공립초	-	110	3,878	△3,878	순감
공립특수	-	-	93	△93	순감
사립	300	100	100	200	200.0
사립고	-	418	2,109	△2,109	순감
사립중	-	109	272	△272	순감
사립특수	-	-	23	△23	순감

-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법정 문서로서 사업별설명서를 통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 사업부서는 학교별 노후조리기구 내용연수 현황을 토대로 사업 물량을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1교당 평균 지원단가(약 3,200만원)를 산출할 수 있음에도,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을 위한 학교회계전출금을 작성하여 산출기초 없이 '1식'으로만 제출하여 대상학교 수는 물론 학교별 평균 지원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제출하였음

〈표 2-114〉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1,000,000	-	
공립 (긴급지원 1건)	700,000	○ 학교회계전출금	700,000,000원×1식
사립 (긴급지원 1건)	300,000	○ 학교회계전출금	300,000,000원×1식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2017

- 사업부서는 동 소요예산이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학교 급식실의 조리기계·기구 노후화 및 고장 등으로 교체 및 확충이 긴급하게 필요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수 및 지원액을 예산편성 시점에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관련 법령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까지 편성하

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긴급지원을 이유로 사실상의 포괄비를 편성한 사례로 개별 세부사업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교육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편성 사례로 판단됨
- 사업부서는 의회가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평균 지원액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긴급 지원을 이유로 예비비성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보건실현대화사업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2027)

- 보건안전진흥원 소관 **보건실현대화사업**은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후화된 보건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6억 4,000만원) 보다 △56.2%, △3억 6,000만원 감액된 2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2-115〉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6년도 예산안(A)	2025년도		증 감 (C=A-B)	증감률 (C/B)
		본 예산	최종예산(B)		
계	280	520	640	△360	△56.2
학교보건실현대화사업	280	520	640	△360	△56.2

- 동 사업내용이 신축 및 리모델링 후 10년이 경과된 보건시설을 기준으로 환경개선비와 기구(용품) 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시설안전과의 '학교 관리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지원단가 4,000만원을 적용하여 공립학교 4개교, 사립학교 3개교 총 7개교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표 2-116〉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계	280,000	-	
공립	160,000	○ 학교회계전출금 40,000,000원×4교	
사립	120,000	○ 학교회계전출금 40,000,000원×3교	

※ 자료근거 :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2028

-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지침에는 모든 시설사업은 지원 대상학교 및 학교별 구체적 지원내역을 확정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26년 2월~3월에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6년 4월~5월에 학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점에 지원 대상학교가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비만 우선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이 서울시교육청의 시설사업인 '학교신증설·학교시설확충·학교시설환경개선'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으나,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동 사업을 "보건시설 환경개선 및 기구교체"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상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대상학교 확정 절차를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